

노 동 법 (발췌)

의결 제51/2001/QH10호에 따라 개정 및 보충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1992년도 헌법에 의거하여,

국회는 노동조합법을 공포한다.

제9장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제1절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규정

제133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법률준수

노동과 생산에 관련된 모든 기업, 기관, 조직, 개인은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4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대한 국가 정책

1. 국가는 과학적 연구에 투자하고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위한 도구, 설비 및 개인보호구를 생산하는 시설의 발전을 지원한다.
2. 국가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서비스 개발을 장려한다.

제135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정책

1. 정부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의회에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지역 정책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사회·경제발전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36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1. 노동보훈사회부는 부처, 분과, 지방과 협력하고 주관하여 노동안전 및 노동

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을 작성·발표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사용자는 국가기술규정, 지역기술규정 상의 기준을 기초로 하여 각 기계, 설비 및 사업장에 적합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내규 및 업무 절차를 수립한다.

제137조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의 보장

1. 엄격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이 요구되는 기계·설비·자재·물질의 생산·사용·보관·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신축·확장·개조하는 경우, 투자자 및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및 환경의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자재·에너지·전기·화학물질·식물보호물질을 생산·사용·보관·운송하는 경우, 기술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수입은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또는 공표·적용되고 있는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제138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사업장이 관계 기술규정에서 명시한 공간, 환기, 분진, 증기, 유독가스, 방사능, 전자기장, 온도, 습도, 소음, 진동, 그 밖의 유해 요소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고, 그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검사·측정하여야 한다.
 - b) 기계, 설비, 작업장에 대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대한 조건들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또는 공표·적용되고 있는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 c) 위험·유해 요소를 제거 및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건강관리를 개선하는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내 위험·유해 요소를 검사 및 평가한다.
 - d) 기계, 설비, 작업장, 창고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유지한다.
 - d) 기계, 설비, 사업장의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표지를 마련하고, 사업장 내에 잘 보이고 읽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e)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때에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임무와 관련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규정, 절차, 내규를 준수한다.
- b)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보장을 위해 제공된 개인보호장비 및 기타 보호장치를 사용하고 유지한다.
- c) 산업재해, 직업병, 유해·위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발견하는 즉시 이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와 산업재해의 피해 복구에 참여한다.

제2절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제139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

- 1. 사용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속하고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생산·경영 시설의 경우, 사용자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2.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0조 사고 처리 및 응급조치

- 1. 사고 처리 및 응급조치에 관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 a) 사고 처리 및 응급조치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 b) 사고 및 산업재해의 발생 시 적시에 구조조치와 응급처치가 행해지도록 기술 및 의료 시설을 갖춘다.
 - c) 즉시 치료 조치를 실행하거나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 위험이 있는 기계, 설비 및 사업장의 즉각적인 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 위험이 명백하거나,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장에서 퇴거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노동규율 위반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위험이 제거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하거나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141조 위험·유해 요소가 있는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물급여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라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2조 산업재해

1. 산업재해란 업무나 작업의 수행 과정 중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신체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은 직업훈련생, 견습생, 수습직원에게도 적용된다.
2.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적시에 응급처치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장에서의 모든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타 중대한 사고는 정부 규정에 따라 신고, 조사 및 기록되어야 하고, 통계자료로 보관되고,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제143조 직업병

1. 직업병이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근무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보건부는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및 사용자대표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보훈사회부와 협의하여 직업병 목록을 고시한다.
2. 직업병 피해 근로자는 충분한 치료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개별적인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44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1. 의료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부터 안정된 치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게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을 주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게 이 법 제1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의 권리

1.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제도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지급의 경우, 사용자·근로자 쌍방 합의 하에 1회 지급하거나 매달 지급한다.
3. 근로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5% 이상 상실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상한다.
 - a) 근로자의 근로능력 상실률이 5~10%인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5개월분 이상을 보상한다. 근로능력 상실률이 11~80%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근로능력 상실률 1%당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0.4개월분을 가산하여 보상한다.
 - b) 근로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인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시행령의 유가족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30개월분 이상을 보상한다.
4.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근로자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금액의 40% 이상을 지급받는다.

제146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서의 금지행위

1. 현물급여 대신 현금 지급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은폐, 허위 신고 및 보고

제3절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

제147조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설비 및 자재의 검정

1.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및 자재는 사용개시 전에, 그리고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설비 및 자재의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8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계획

사용자는 매년 생산과 경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149조 근로 중인 개인을 보호하는 장비

1. 위험·유해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개인보호구를 제공받고, 노동보훈사회부의 규정에 따라 작업 중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인보호구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50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교육

1. 사용자와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검사와 시험을 거쳐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 직업훈련생, 견습생의 채용 및 인사배치 시에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작업하는 이들에게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엄격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검사와 시험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운영기관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정책의 기준을 마련하며,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1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정보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 직업병, 위험·유해한 요소들,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보장조치들의 상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2조 근로자의 건강관리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및 배치 시에 각 업무별로 요구되는 건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매년 직업훈련생, 견습생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여성근로자, 과중·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미성년근로자 및 고령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에 관한 의료진단을 받아야 한다.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근로능력 상실률을 판단하는 의료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료, 요양 및 직업재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5. 근로자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를 입은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문 의료검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업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건강기록과 종합관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유독하거나 전염성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 후 해독 및 소독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법은 2012년 6월 18일 제13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통과되었음.

국 회 주 석

(서명)

응우옌 싱 홍

정 부

번호 No. 45/2013/ND-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2013년 5월 10일, 하노이

시 행 령

노동법 상의 근로시간·휴식시간 및 노동안전·노동위생에 관한 세부규정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18일 노동법에 근거하여,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제의에 따라,
정부는 노동법 상의 근로시간·휴식시간 및 노동안전·노동위생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장

적용대상 및 범위

제1조 개정범위

본 시행령은 노동법 상의 근로시간·휴식시간 및 노동안전·노동위생에 관한 몇
가지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본 시행령의 근로시간·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적용된다.
2. 본 시행령의 노동안전·노동위생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용된
다.
 - a) 베트남 근로자,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목적의 견습생·
실습생
 - b) 기업, 기관, 조직, 협회, 가구(家口), 기타 관련된 개인

제2장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1절 근로시간

제3조 급여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1. 본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근로시간 내 휴식
2. 업무의 성질에 따른 휴식
3. 자연적인 생리현상과 같이 노동과정 중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휴식
4.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1일 60분의 휴식시간
5. 생리기간 중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매일 30분의 휴식시간
6. 근로자의 실수·잘못으로 발생되지 아니한 작업중지에 따른 휴식
7. 노동안전·노동위생에 관한 훈련·교육시간
8.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혹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회의·교육·훈련시간
9. 노조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는 상급노조의 간부소집 회의·교육·훈련시간
10. 정년퇴직 전 마지막 해에 고령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단축 근무

제4조 초과근무

1. 하루 중의 초과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b) 공휴일·명절·주 휴일에 초과 근무할 경우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1년에 200시간에서 300시간까지 초과근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a) 초과근무가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수출품 생산, 가공 기업: 방직, 봉제, 가죽, 신발, 농업·임업·수산업 가공품.
- 전기, 원거리 통신, 정유, 송·배수의 공급과 생산
- 기타 지연 불가능한 급박한 일을 해결해야 할 경우

b)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 사용자는 문서를 통해 중앙직할시·성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부른다)에 통보해야 한다.

3. 노동법 제106조 제2항 c)에 따른 추가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a) 한 달 중 최대 7일간을 연속해서 초과근무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해 추가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b) 초과근무에 따른 추가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제97조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휴식시간

제5조 근무시간 중 휴식

1.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노동법 제10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무시간은 8시간 또는 6시간을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휴식시간의 시점은 사용자가 결정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휴식시간 외에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포함하여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에 산입하여 될 수 있다.

제6조 연차휴가 산정과정에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시간

1. 학습·교육에 관한 계약을 근거로 실시되는 근무목적의 학습·교육시간
2. 교육 후 현장투입을 위해 실시되는 실습시간
3. 노동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가
4. 사용자의 동의하에 지급되는 도합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유급휴가

5. 산업재해·직업병에 의해 지급되는 도합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휴가
6. 병가에 의해 지급되는 도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휴가
7.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휴가
8. 노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노조활동휴가
9.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지 않는 작업중단·휴무
10. 일시적인 작업중단에 따른 휴무
11. 임시구금·수감 되었으나 사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해 범죄 무혐의로 판결되어 복직예정인 근로자의 휴무

제7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법

노동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본 연차휴가에 장기근무에 따른 추가 연차휴가 수가 있을 경우 이를 더하고, 이를 12달로 나눈 뒤, 연중 실제 근무한 월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소수점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결과 값이 0.5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이를 한자리 수로 반올림 할 수 있다.

제8조 구정(음력) 휴가

1. 노동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말 1일·연초 4일(음력) 또는 연말 2일·연초 3일(음력) 중 택일하여 구정(음력) 휴가를 지급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정(음력) 휴가 실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3장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제1절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일반규정

제9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정책 수립

1.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부수상에 의해 결재 받은 5년 주기의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정부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2.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정부정책, 관련 부처·기관·지방위원회의 예산을 근거로 하여 노동보훈사회부는 매년 정책실행비용 및 국가예산을 총합하고 이를 재정부·투자계획부·결정권을 가진 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제10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담보방안 수립

1.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위한 물자·물질·장비·기계를 유지·보관·사용·생산하는 기반시설·공정을 개조하거나 확대·신설할 경우, 투자자·사용주는 근로자의 근무지와 환경의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시설·공정의 개조·확대·신설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기반시설·공정의 규모와 위치에 관해서는 기반시설·공정부터 다른 공정 또는 거주지까지의 거리를 자세히 표시한다.
 - b) 기반시설·공정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묘사·열거한다.
 - c) 위험·위해요소 및 작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들에 대해 제시한다.
 - d) 위험·위해요소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고처리·응급조치 방법을 제시한다.

제11조 위험·위해·과중업무를 담당하는 고령근로자 사용

1. 위험·위해·과중업무에 고령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가능하다.
 - a) 법률규정에 따라 전문가로 공인받았거나 기술관련 인증서·확인서를 보유한 15년 이상의 경력의 고급전문기술·경험을 보유한 고령근로자
 - b) 보건부장관에 의해 제정된 건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근로자
 - c)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동일 근로자 사용

d) 1년 최소 2번의 정기검진

d) 고령근로자를 제외한 최소 1명의 비고령근로자

2. 이 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부 또는 부에 준하는 기관은 위험·위해·과중업무와 고령근로자를 특별 고용하는 직업·분야·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2절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제12조 산업재해 및 중대사고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업무나 의무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 있는 근로과정(이에는 다음과 같은 노동법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필수적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포함된다. 근무 중 휴식시간, 교대근무 중 식사, 현물 보양차원의 식사, 생리위생, 세면, 수유, 용변, 작업 전 준비 또는 작업 후 정리 시간 등) 중에 근로자 신체의 일부나 기능을 손상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근로상 위험·유해 요소 작용으로 발생한 근로재해를 말한다.
2.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거주지에서 근무지로, 근무지에서 거주지로 돌아갈 때 합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3.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 근로자의 사망
 - b) 중대한 산업재해
 - c) 경미한 산업재해
4. 업중사고라 함은 노동과정(산업재해를 포함하지 않는)에서 발행하여 근로자나 사용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재해를 말한다.

제13조 산업재해·직업병·업중사고에 대한 공표·조사·통계·보고·배상·보조금 지급

1. 산업재해·직업병·업중사고에 대한 공표·조사·통계·보고·배상·보조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a) 사용자는 사망 산업재해,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 및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생지의 노동보훈사회부 조사반에 즉시 신고할 책임이 있다.
 - b) 사용자는 1인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 경미한 산업재해 및 심각한 사고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 c) 근로감독관은 사망 산업재해,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를 조사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조사를 마친 산업재해, 심각한 사고에 대하여 제소, 고소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 d) 산업재해, 심각한 사고의 조사 과정 중에 불법 징후가 포착된 경우, 근로감독관 및 사용자는 반드시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형사소송 시행기관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d) 사용자는 사고통계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 노동 관련 국가기관에 6개월, 1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직업병에 대한 통계·보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a) 사용자는 직업병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정기 6개월·1년마다 노동·보건사법권이 있는 국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b) 보건부장은 직업병을 통계·보고하는 수속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3.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배상·보조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장의 안내를 따른다.

제14조 위험·위해요소 관리

직업병 및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위험·위해요소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위험·위해요소에 대한 평가·조사, 위험·위해요소를 감소·제거하기 위한 제안, 노동조건 개선, 근로자의 건강보호
2. 최소 1년 1회의 위해요소에 대한 수치조사, 법률규정에 따른 관련문서 유지 및 추적관리

3. 산업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료보건장비
보유

4. 사고처리 방안 설립

(누락)

제19조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의 유효기간

1. 신규발급 또는 기간만료 후 재발급된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 분실 또는 파손을 사유로 재발급된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기 발급받은 등록증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20조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활동 정지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활동정지 당할 수 있다.

1. 본 시행령 제16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률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검정 활동현황 보고를 연속하여 18개월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21조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의 철회

1. 활동정지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정지결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3회의 행정위반 처벌 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3회의 행정위반 처벌을 받은 경우
3. 활동정지 기간 중 검정활동을 실시한 경우
4. 등록증 발급, 재발급, 수정·보완 제출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5. 등록증 내용을 위조한 경우

제22조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

1.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a) 검정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른 검정활동 실시
 - b) 법률 규정에 따른 서비스 대가, 비용 징수
 - c) 검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건의, 제소, 고소
 - d) 노동안전 기술검정을 받는 기업에게 기술검정을 위한 문서 및 정보 제공

요청

d)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한

2.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노동안전 기술검정 등록증에 기재된 대상·범위 내에서 검정 서비스를 공급한다.
- b)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c) 검정규정에 따라 검정활동을 실시한다.
- d) 법률 규정에 따라 검정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검정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 실시한 검정결과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이를 회수한다.
- d) 법률 규정에 따라 검정활동 현황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한다.
- e) 검정문서를 보관한다.
- g)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을 진다.

제23조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각종 기계·설비·자재의 사용에 관한 책임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각종 기계·설비·자재를 사용하는 기업, 기관, 조직, 협동조합, 가구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1.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각종 기계·설비·자재의 사용개시 전에 또는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기술검정을 받기 위하여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 2. 권한 있는 기관에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각종 기계·설비·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검정에 대하여 보고한다.

제24조 노동안전 기술검정 활동에 대한 국가관리기관의 책임

각 부처, 부급 기관, 정부 산하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1. 노동보훈사회부가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각종 기계·설비·자재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관리 분야에 속하는 각종 기계·설비·자재 리스트를 노동보훈사회부에 제출한다.

2. 본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관할권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검정규정을 노동보훈사회부로부터 문서로 된 의견서를 받은 후 발행한다.
3. 해당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노동안전 기술검정 등록증의 발급·철회에 관한 요건·절차·수속 및 본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한다.
4. 관리 관할권에 속하는 노동안전 기술검정 활동에 대하여 검사·감사를 실시한다.
5. 노동안전 기술검정 활동 현황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노동보훈사회부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절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의 관리

제25조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의 관리

1. 노동보훈사회부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하여 일원화된 국가의 관리 책임을 수행하고, 정부 앞에 책임진다.
 - a)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공문서를 관할권에 따라 작성·발행하거나 발행 관할권 기관에 제출한다.
 - b) 국제적인 통례에 따른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기관과 협력하고 이를 지휘한다.
 - c)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법률을 선전·홍보한다.
 - d)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를 안내·관리한다.
 - d)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기관, 조직, 협동조합에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실시를 안내한다.
 - e)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관련 내용을 직업학교, 훈련기관의 강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 g) 산업재해를 조사하고,公安부 및 최고인민감찰원과 협조하여 범죄 징후가 보이는 산업재해를 조사·처리한다.
 - h)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법률 집행에 대하여 감

사·검사한다.

i)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분야의 국제협력을 실시한다.

2. 보건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관할권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 업종·업무별 건강기준 및 건강보호에 관한 공문서를 수립·발행하거나 발행 관할권 기관에 제출한다.

b) 직업병 리스트 발행에 있어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한다.

c)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하여 보건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엄격한 노동위생이 요구되는 물질의 생산·사용·보관을 위한 건물·시설물의 신축·확장·개조시에 노동위생 보장을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d) 현장 의료구급대의 조직, 의료구급훈련의 내용을 안내한다.

d) 정기 건강검진, 채용 시 건강검진, 직업병 검진의 실시,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의 근로능력 회복·치료, 장애 수준 결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관련 업무를 관리·안내한다.

3. 과학기술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과학기술의 적용 및 연구를 관리한다.

b)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각종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4. 교육훈련부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의 내용이 대학교육기관의 강의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보훈사회부는 예술 및 스포츠 분야 종사자의 업무여건에 적합한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안내한다.

6. 재무부와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관련 훈련, 노동안전 기술검정 활동과 관련된 각종 비용의 적정수준·징수·납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7. 각 부처, 부급 기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관리의 실시를 책임진다.

8. 성급 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개선,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보장 목표를

수립한다.

제5절

시행 규정

제26조 시행효력

1. 이 시행령은 2013년 7월 1일자로 시행효력을 갖는다.
2.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노동법 조항을 상세히 규정·안내하는 1994년 12월 31일자 시행령 195/CP,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노동법 조항을 상세히 규정·안내하는 1995년 1월 20일자 정부 시행령 06/CP,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노동법 조항을 상세히 규정·안내하는 1994년 12월 31일자 시행령 195/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2002년 12월 27일자 시행령 109/2002/ND-CP,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노동법 조항을 상세히 규정·안내하는 1995년 1월 20일자 정부 시행령 06/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2002년 12월 27일자 시행령 110/2002/ND-CP,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노동법 조항을 상세히 규정·안내하는 1994년 12월 31일자 시행령 195/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2002년 12월 27일자 시행령 109/2002/ND-CP와 사회단체의 설립·조직·활동·해산의 절차·조건에 관한 2008년 5월 30일자 시행령 68/2008/ND-CP의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한 2012년 10월 8일자 시행령 81/2012/ND-CP의 제2조 내용은 이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시행령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각종 규정은 해당자와 관련된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군대·공안에 근무 중인 공무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7조 상세규정 및 시행안내

1.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이 시행령의 시행을 안내한다.
2. 장관, 부급 기관의 장, 정부 산하기관의 장,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시행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 부 총 리

(서명)

응우옌 쩌언 중

정 부

번호 No. 95/2013/ND-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2013년 8월 22일, 하노이

시 행 령

노동안전 및 위생 분야 규정위반에 관한 행정처벌 (발체)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20일 행정처벌법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18일 노동법에 근거하여,
2006년 6월 29일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2006년 11월 29일 근로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근로자를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제의에 따라,
정부는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을 공포한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개정범위

본 시행령은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위반행위·행정처벌형식·벌금수준·수속절차·권한 및 부정적이 효과 극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사용자
2. 근로자
3. 본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위반행위를 범한 조직 및 개인

제3조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규정

1. 본 시행령의 제4조 제1·2항, 제9조 제2·4·6항, 제17조 제6·7항,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령의 제2·3·4장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은 개인에게 적용된다. 조직에게 적용되는 벌금 수준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 수준의 2배이다.
2. 본 시행령의 제6장에 규정된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권한은 개인에게 적용된다. 조직에게 적용되는 처벌 권한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권한의 2배이다.

제2장

노동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형식, 수준 및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제14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 위반

1. 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중 충분한 휴식, 교대근무시 휴식, 경조휴가 및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백만동에서 5백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주휴일, 연차휴가, 공휴일, 명절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위반행위를 범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 a) 1~1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십만동에서 1백만동까지의 벌금
 - b) 11~5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백만동에서 3백만동까지의 벌금
 - c) 51~1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백만동에서 7백만동까지의 벌금
 - d) 101~3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백만동에서 1천만동까지의 벌금
 - d) 301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만동에서 1천5

백만동까지의 벌금

3.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사용자는 2천만동에서 2천5백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 a) 노동법 제104조에 규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 부과
 - b) 노동법 제10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는 행위
4. 노동법 제106조 제2항 제b호에 규정된 초과근무시간 기준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공휴일, 명절 및 주휴일에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2천5백만동에서 5천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5. 추가적인 처벌: 이 조 제4항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사업 운영을 정지시킨다.

제16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사용자는 2백만동에서 5백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 a)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시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의 의견 미청취
 - b) 사업장 내 위험·유해 요소를 검사·평가하지 않은 행위
 - c)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
 - d) 법률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직업병, 중대한 사고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
2.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사용자는 5백만동에서 1천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 a) 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 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평가 미실시
 - b) 엄격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이 요구되는 기계·설비·자재·물질의 생산·사용·보관·유지를 위하여 시설·공장을 신축·확장·개조하는 경우,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계획 미수립
 - c) 규정에 따른 작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조건 미보장

- d) 기계·설비·자재·에너지·전기·화학물질·식물보호물질을 생산·사용·보관·운송, 기술의 변경 및 신기술의 수입에 적용되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기준 위반
- d) 규정에 따른 기계, 설비, 작업장, 창고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의 미실시
- e) 기계, 설비, 사업장에 관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업장 내에 잘 보이고 읽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g) 산업재해 발생시 바로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는 기술설비 및 의료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h)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 미지정
- i) 규정에 따라 모든 제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와 지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를 분류하지 않는 행위
- k) 산업재해, 심각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조사하지 않는 행위
- l) 의료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는 행위, 의료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응급처치부터 안정된 치료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m)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게 보조금 및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부정적인 효과의 극복방법

- a) 이 조 제2항 제b호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이 요구되는 기계·설비·자재·물질의 생산·사용·보관·유지를 위하여 시설·공장을 신축·확장·개조하는 경우,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b) 이 조 제2항 제c호 및 제d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c) 이 조 제2항 제g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기술설비 및 의료장비를 제공하도록 한다.

d) 이 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의료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하고,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의료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응급처치부터 안정된 치료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d) 이 조 제2항 제m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및 보상과 함께 처벌이 부과된 시점에 베트남 중앙은행에 의해 공포된 최대한의 요구불예금 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17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근로자는 경고 또는 5십만동에서 1백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산업재해, 직업병, 유해.위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발견하는 즉시 책임있는 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

b)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 및 산업재해로부터 발생한 피해 복구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c) 제공된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2. 근로자, 직업훈련생, 견습생의 채용 및 인사배치 시에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위반행위를 범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a) 1~1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백만동에서 3백만동까지의 벌금

b) 11~5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백만동에서 5백만동까지의 벌금

c) 51~1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백만동에서 1천만동까지의 벌금

d) 101~3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만동에서 1천5백만동까지의 벌금

d) 301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5백만동에서 2천만동까지의 벌금

3.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사용자는 1천만동에서 1천5백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 a)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 위험이 있는 기계, 설비 및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거나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b)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치료 또는 정기 건강검진을 제공하지 않거나, 건강상태에 대한 개별 건강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행위
- c) 규정에 따라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
- d) 규정에 따라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를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행위
- d) 사업장 내 산업재해, 직업병, 위험·유해요소의 현황 및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
- e) 규정에 따라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 g) 규정에 따라 직업병에 관한 의료진단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h) 의료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를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행위
- i) 유독하거나 전염성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 후 해독 및 소독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4. 위험·유해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품질·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현물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현물급여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위반행위를 범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 a) 1~1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백만동에서 6백만동까지의 벌금
- b) 11~5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6백만동에서 1천만동까지의 벌금
- c) 51~1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만동에서 1천5백만동까지의 벌금
- d) 101~3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5백만동에서 2천만동까지의 벌금

- d) 301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천만동에서 3천만 동까지의 벌금
- 4. 위험·유해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품질·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현물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현물급여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위반행위를 범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 a) 1~1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백만동에서 6백만동까지의 벌금
 - b) 11~5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6백만동에서 1천만동까지의 벌금
 - c) 51~1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만동에서 1천5백만동까지의 벌금
 - d) 101~3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5백만동에서 2천만동까지의 벌금
 - d) 301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천만동에서 3천만 동까지의 벌금
- 5.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설비 및 자재의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 a)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설비 및 자재의 검정을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용자는 1백만동에서 3백만동까지의 벌금
 - b)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설비 및 자재의 사용 개시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용자는 3백만동에서 5백만동까지의 벌금
 - c) 검정에 통과하지 못한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한 사용자는 5천만동에서 7천5백만동까지의 벌금
 - d) 각 기계, 설비 및 자재에 대하여 총 검정비용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
- 6.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운영기관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 a)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2백만동에서 5백만동까지의 벌금

- b) 프로그램에 위반하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 제공시 충분한 교사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 제공 자격요건에 따른 교육서비스 제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 5백만동에서 1천만동까지의 벌금
 - c) 교육 제공 없이 교육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교육받지 않은 자에게 교육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교육 제공 자격증명서를 넘어서는 교육을 제공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 2천만동에서 2천5백만동까지의 벌금
 - d) 교육 실시 문서를 위조하고, 교육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한 경우 2천5백만동에서 5천만동까지의 벌금
 - d) 교육 제공 자격증명서 없이 교육을 제공하거나, 만료된 교육 제공 자격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또는 교육 제공 자격증명서 신청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 5천만동에서 7천5백만동까지의 벌금
7.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이 노동안전 기술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 a) 규정에 따라 노동안전 기술검정활동 현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2백만동에서 5백만동까지의 벌금
 - b)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자격요건에 따른 기술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연속하여 18개월 동안 검정 활동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 5백만동에서 1천만동까지의 벌금
 - c)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을 넘어서는 검정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규정된 검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 4천만동에서 5천만동까지의 벌금
 - d)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을 조작하거나, 검정 실시 문서를 위조하거나, 검정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 5천만동에서 7천만동까지의 벌금
 - d) 부정확한 검정결과를 제공하거나, 실제 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검정결과를 제공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 7천만동에서 1억동까지의 벌금

금

- e)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 없이 검정을 수행하거나, 만료된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또는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 신청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 1억동에서 1억5천만동까지의 벌금

8.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검정인력은 2백만동에서 4백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 a) 권한 있는 기관이 발표 또는 공표한 검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b) 검정인력 자격증 없이 검정을 수행하거나, 만료된 검정인력 자격증을 사용하거나, 또는 검정인력 자격증을 넘어서는 검정을 수행하는 경우

9. 추가적인 처벌

- a) 이 조 제6항 제b호를 위반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운영기관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교육 제공을 정지시킨다.
- b) 이 조 제6항 제c호 및 제d호를 위반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운영기관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운영기관 자격증명서를 박탈한다.
- c) 이 조 제7항 제b호를 위반한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활동을 정지시킨다.
- d) 이 조 제7항 제c호 및 제d호를 위반한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을 박탈한다.
- d) 이 조 제8항 제a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검정인력의 자격증을 박탈한다.

10. 부정적인 효과의 극복방법

- a) 이 조 제4항의 현물급여 제공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급된 현금을 현물급여로 전환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b) 이 조 제4항의 개인보호장비 제공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험·유해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도록 한다.
- c) 이 조 제3항 제a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 위험이 있는 기계, 설비 및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 d) 이 조 제5항 제c호 및 제d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설비 및 자재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 d) 이 조 제6항 제c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운영기관 자격증명서를 취소하도록 한다.
- e) 이 조 제7항 제c호 및 제d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정결과를 취소하도록 한다.

정 부 총 리

(서명)

응우옌 쩌 쩌

시행규칙

노동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 간의 부처간
시행규칙

2006년 6월 29일 수정·보완되고, 2002년 4월 2일 수정·보완된, 1994년 6월 23일 노동
법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 27일 시행령 110/2002/ND-CP에 의해 수정·보완된, 1995년 1월 20일 노
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시행령 06/CP에 근거하여,
노동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베트남노동총연맹·재정부 및 연관기관인 노동
보훈사회부·보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개정범위 및 적용대상

1. 이 시행령은 노동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업무총괄·요약·보고·통계·
조사·계획수립·책임범위·기관 및 조직에 대해 규정한다.
2. 이 시행령은 정부행정기관·정치사회조직·사회직업조직 및 베트남에 사무소를
둔 비정부조직을 제외한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기업 및 노동
사용기관(이하 ‘노동기관’이라 부른다)에 적용된다.

제2조 시행경비

노동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 관련업무 시행에 따른 경비는 기업소득세법에
관한 법률시행규정에 따른 노동기관의 합리적인 지출이며, 노동기관의 일반활
동경비 및 경영산출경비에서 결산한다.

제2장

노동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책임범위 및 기관

제4조 노동안전위생부서

1. 노동기관은 다음의 최소기준에 따라 노동안전위생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 a) 총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한 노동기관은 겸직제도에 따라 근무하는 최소 1명의 노동안전위생 간부를 두어야 한다.
 - b) 300명~1,000명의 근로자를 보유한 노동기관은 전임제도에 따라 근무하는 최소 1명의 노동안전위생 간부를 두어야 한다.
 - c) 총 1,00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노동기관은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사무소나 반을 설립하거나 최소 2명의 노동안전위생 전임간부를 두어야 한다.
2. 노동안전위생 간부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a) 안전기술·화재방지·환경기술·노동위생 관련 전공자
 - b) 노동기관의 생산·경영·서비스에 관한 이해
3. 노동기관이 이 조 제1항, 제2항에 부합하는 노동안전위생부서를 설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노동안전 및 위생업무를 시행할 능력을 가진 조직과 계약을 해야 한다.

제5조 노동안전위생부서의 기능과 임무

1. 기능

노동안전위생부서는 노동안전 및 위생활동을 실행·검사·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돕거나 참모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임무

- a) 다음과 같은 일을 전개하는 노동기관 연계부서와 연합하다.
 - 노동기관의 화재예방·노동안전 및 위생을 보장하는 내규·규제·규정·방법

설립

-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계·장비·물자·중요물질 등록 및 검정
- 매년 노동안전위생계획 수립과 계획실행 관리 및 재촉
- 노동기관과 국가의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을 알리고 선전하는 일
-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훈련
- 생산부 및 과중·유해·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대한 최소 1달 1회의 정기적인 노동안전 및 위생 검사
- 노동환경·식품안전(급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검사, 직업병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상태추적, 근로자에게 건강관리법 제시

b) 이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 이행여부 검사 및 제출

c) 노동안전 및 위생 현안에 대한 극복방법을 근로자에게 제시

제6조 노동안전위생부서의 권한

1.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방법들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를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긴급한 경우) 할 것을 생산부 책임자에게 요구할 권한
2. 수명이 다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기계·장비의 활동정지
3. 현행 법률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사고 관리·보고·통계 및 조사 참가
4. 경영생산상태에 대한 총괄·요약·조례에 참여, 노동안전 및 위생계획의 실행 점검
5. 경영생산계획에 관한 회의에서 공장·기계·장비가 들어간 시공·설계에 대한 노동안전 및 위생영역에 관한 충고
6. 근로자 또는 하급단위 조사검열관의 제안·제시를 해결하여 사용자에게 총합·제시
7. 노동안전 및 위생, 노동보호업무에서의 개인 및 조직에 대한 규율처리·보상 제시 및 종합, 보상과 시험에 대한 참견

제7조 노동기관의 보건부서

1. 노동기관은 다음과 같은 최소규정에 따라 기관 내 보건부서를 설립·정비해야 한다.
 - a)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관은 중·고등수준의 의학을 전공한 최소 1명의 공중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 b) 동일 장소에서 1,00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관은 보건소 또는 최소 1명의 간호사를 보유한 보건사무소·보건반 또는 최소 1명의 일반의를 두어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부서를 설립하지 않은 노동기관 또는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한 노동기관은 다음 중 한 곳과 건강관리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한다.
 - a) 도시, 읍, 면 보건소
 - b) 지역 일반진료실
 - c) 성에 속한 시군구 병원 또는 의학센터

제8조 보건부서의 기능과 임무

1. 기능

보건부서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일을 돕거나 참모하는 기능을 한다.

2. 임무

- a) 노동기관 내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응급처치·치료를 한다.
- b)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한다.
 - 정기건강검진, 직업병진찰, 직업병문서(보유 시)·정기건강검진문서·채용건강문서 기록 및 유지
- c) 분업생산과 교대생산(보유 시) 응급치료서비스 의약품 및 장비비품 관리한다.
- d) 노동위생·직업병을 일으키는 위험요소 및 예방법에 관한 내규를 수립한다.

- d)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노동기관 내 대처방안들을 준비하고 응급시설소를 설치한다.
- e) 노동기관 내 근로자들을 위해 위생·직업병 예방·음식위생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안전위생부서와 연합하여 노동환경위험요소를 측정·조사·관리하고, 노동위생법을 실시를 위해 안내한다.
- g) 과중·유해업무를 하는 근로자, 정기검진결과 4급·5급 근로자,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위한 회복 및 요양 계획을 수립한다.
- h)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소의 영향, 직업과 관련된 병 예방, 작업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응급처치법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훈련을 조직한다.
- i) 매년 노동환경에 대한 검사 및 감독한다. 기관의 노동위생 문서 관리한다.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고·조치한다.
- k) 건강에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현물 보양제도를 실시·안내한다.
- l)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상해, 건강손상에 대한 평가 절차를 완료하는데 참여한다.
- m)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보건기관 또는 공중보건부·지부(보유 시)의 지도를 받거나 협력한다. 지역보건기관과 공중보건부·지부의 전문업무에 관한 지도를 충분히 실시하고 받아들인다.
- n) 지역보건기관 또는 공중보건부·지부(보유 시)에 근로자의 직업병과 건강 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제9조 보건부서의 권한

1. 경영생산상태에 대한 총괄·요약·조례에 참여, 노동안전 및 위생계획의 실행 점검
2. 경영생산계획에 관한 회의에서 공장·기계·장비가 들어간 시공·설계에 대한 노동안전 및 위생영역에 관한 충고
3.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위법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를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긴급한 경우) 할 것을

생산부 책임자에게 요구할 권한

4. 노동위생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는 물질사용에 대한 사용금지
5. 노동안전 및 위생, 노동보호업무에서의 개인 및 조직에 대한 규율처리·보상 제시 및 종합, 보상과 시험에 대한 참여
6. 업무협력과 전문업무 수준향상을 위해 회의에 참여하고 지역보건기관, 공중 보건부·지부(보유 시)와 교류협력

제10조 보건부서의 조직계통

1. 진료기관의 전공 사무실 및 과, 기업의 생산조, 경영생산기관은 일과시간 내 겸직하는 최소 1명의 안전위생원을 두어야한다.
2. 안전위생원은 업무(전공과 노동안전위생기술)에 통달하며, 열정적이고, 노동 안전위생규정을 이행하는데 본보기가 되며, 투표로 선발된 직접 노동자여야 한다.
3. 안전위생원은 “안전위생원 조직의 활동규제”를 바탕으로 기관 노조집행부 또는 전체근로자대표의 관리·지시 하에서 활동한다.

제11조 안전위생원의 임무

1.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의 엄정 이행을 과·사무실·조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촉·상기·안내, 안전장비·개인보호장비 보관, 과장·실장·조장을 대상으로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 이행에 대해 상기
2. 장비와 기계의 불안전 발생, 과·사무실·반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위반·결점,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표준·기준·규정·내규 시행 관리
3. 과·사무실·반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근무하는 방안·방법, 노동안전 및 위생 계획 수립에 참여, 과·사무실·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근무방법에 대한 안내 참여
4. 노동보호제도의 충분한 실행, 노동안전 및 위생담보방안, 작업장·장비·기계 의 안전위생이 결여된 현상을 적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조장 또는 상관에

계 제의

제12조 안전위생원의 권한

1. 안전위생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간부여, 생산조 내 안전위생원의 임무수행에 따른 특별 급여지급, 생산조장과 같은 책임수당 지급
2. 산업재해·사고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위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노동안전 및 위생을 담보하기 위해 생산조 내 근로자들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할 권리
3. 노조 및 조직과 연합한 사용자에 의해서 전공수준·임무·활동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권

제13조 노동보호위원회 조직

1. 1,00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노동기관은 노동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 다른 노동기관들은 활동조건을 충족시키거나 필요시에 노동보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2. 노동기관의 노동보호위원회는 노동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 활동에 관한 상담·협력, 노조조직의 노동안전 및 위생·노동보호업무에 대해 검사·조사·참가할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이다.
3. 노동보호위원회의 구성원수는 노동기관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 a) 근로자대표는 위원회장을 맡는다.
 - b) 기관 노조집행부의 또는 노조조직이 결성되지 않는 곳의 노동자대표는 부 위원회장을 맡는다.
 - c) 부문장 또는 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 간부는 위원회 서기를 겸임하는 상임위원을 맡는다. 만약 노동안전 및 위생 간부가 다른 조직으로부터 계약한 사람이라면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위원회 서기 겸임 상임위원을 맡는다.노동기관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위원회는 연관된 다른 구성원들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인원수는 9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노동보호위원회 임무와 권한

1. 관리규제·행동프로그램·노동안전위생계획 수립, 노동안전위생 조치 및 노동 조건 개선,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방지 수립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협력하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2. 반기(6개월) 및 매년마다 노동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업무시행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 시 불안정한 요소들을 발견할 경우,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3장

노동안전위생계획

제15조 노동기관의 노동안전위생계획 수립

1. 노동기관은 기관의 매년 임무수행 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동시에 노동안전 위생계획도 수립해야한다. 연간계획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내용과 부합하는 노동안전위생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생산조부터 사무실, 반 이상까지 노동안전 및 위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동시에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3. 노동안전 및 위생에 대한 계획 수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 a) 전년도 노동안전 및 위 업무경비, 연간계획상의 노동 상태 및 경영생산계획의 방향·임무
 - b) 전년도 노동안전 및 위생 업무 점검보고 및 사고·산업재해·화재·직업병에서 추출한 노동안전 및 위생 업무상에서 존재하는 결점
 - c) 근로자·노조조직·검사조사단의 견해
 - d) 노동안전 및 위생, 노동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규정
4. 노동안전 및 위생에 대한 계획은 모든 내용·조치·경비·완성시간·이행조직배분을 포함해야한다.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내용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a) 안전기술에 관한 조치 및 화재예방
 - b) 노동위생기술에 관한 조치, 근무조건개선, 통풍시스템, 분진 흡입, 독기 흡입, 채광시스템, 소음차단벽, 설치류 유입방지 시스템, 유해미생물 격리, 샤워실 개조, 노동환경 측정 등
 - c) 근로자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 d) 근로자 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 d)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선전·교육·훈련
5. 노동기관의 구체적인 조건과 상태에 따라 이 시행규칙에 첨부된 부록 제2번에 부합하는 자세한 노동안전 및 위생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제16조 노동안전위생계획 시행조직

1. 노동안전위생계획이 간부 및 사용자에 의해 임무를 부여받은 부에 의해 결재를 받는 즉시, 노동안전위생부서와 보건부서와 함께 협력하여 임무를 전개하고 실행을 재촉·확인한다.
2. 사용자는 정기점검, 노동안전 및 위생 계획실행 평가, 기관 내 근로자들에게 실행결과를 통보할 책임이 있다.

제4장 노동안전위생 자율검사

제17조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자율검사

1. 사용자는 노동기관 내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자율검사 실행을 규정·조직해야한다.
2. 자율검사의 구체적인 내용·형태·기간은 이 시행규칙의 부록 제3번을 준수하여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노동기관급에서는 최소 1회/6개월, 생산조·팀·분업작업장에서는 최소 1회/3개월 전면적으로 검사할 것을 보장한다.

3. 기업법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회사집단은 집단 내 각 회사에게 자율검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5장

통계·보고 및 요약·총괄

제18조 통계·보고

1. 노동기관은 현행규정에 따라 보고를 요하는 내용에 대한 통계목록을 작성해야한다. 통계문서는 노동기관의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대한 정책 및 해결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분업조에서는 최소 5년, 노동기관에서는 10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2. 노동기관(지점, 지방에 위치한 대표사무소, 지방에 위치한 시공단위 포함)은 이 시행규칙 부록 제4번에 규정된 서식대로 상급직접관리기관과 노동사회보훈소·보건소·지방노동연합에 1년 2회의 정기 위생안전 업무보고(반기 및 연간보고)를 해야 한다.
상반기보고는 7월 5일 전까지, 연간보고는 다음 해 1월 10일 전까지 해야한다.
3. 노동사회보훈소는 지역 내 있는 노동기관들의 노동안전위생 업무시행현황을 종합하여 이 시행규칙 부록 제5번에 규정된 서식대로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 전까지 노동사회보훈부로 보내야한다.

제19조 요약·총괄

1. 반기 및 연간 정기적으로 노동기관은 다음과 같은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업무 요약·총괄해야한다.
결과·결점·경험에 대한 분석, 노동기관 내에서 노동안전위생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단위 및 조직에 대한 보상, 노동안전위생을 담보하기 위한 운동착수.
2. 요약·총괄업무는 분업조·생산팀에서 노동기관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실

시되어야 한다.

제6장 시행책임

제20조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1. 노동기관에서의 노동안전위생, 산업재해, 직업병에 관한 규정을 실행하는데 법 앞에 책임을 진다.
2. 책임분석 결정과 관리간부 및 노동기관의 경영·생산 특성에 부합하는 각각의 전공업무부·직속단위에 대한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사용자는 노동기관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상부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원을 추가 보충할 수 있으나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현행 법률규정에도 부합해야한다.
3. 노동안전위생계획 및 프로그램 수하의 개인과 직속단위에 대한 지도·조직을 한다
4. 현행규정에 따라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 a) 매년 노동기관의 경영생산계획에 수립 시,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조치·계획 및 노동조건개선에 대한 내용을 결재·수립
 - b) 개인보호장비를 구비 및 근로자를 위한 노동보호·노동안전·노동위생에 관한 제도를 시행
 - c) 노동기관 내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내규·조치들을 시행·검사하는 감독관 지명
 - d) 노동안전, 노동위생, 기계·설비·물자(공업·기계·장비·물자를 바꿀 때 모두)에 관한 규명·내규 검토·수립
 - d) 근로자의 노동안전과 노동위생에 관한 기준·규정·조치에 대한 안내 및 훈련

- e) 근로자 정기검진, 직업병 검사(발병 시) 실시
 - g) 근로자 치료 후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감정·평가
 - h) 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한 공표·조사·통계·보고 및 노동안전위생 업무수행 상태·훈련·정기검정에 관한 통계·보고
5. 노동기관의 노동안전위생시행·환경보호에 대한 군중운동 조직시 기관 내 노조집행위와 협력한다.

제21조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대한 기관노조의 임무

1. 노동자를 대표하여 집단노조협약 중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조항에 대해 서명한다.
2.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법률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용자 및 근로자를 교육·운동·선전한다. 안전근무를 위한 규범·기준·조치들을 이행하고, 생산과정에서 안전·위생이 결여되어 있거나 안전기술규정위반 및 무질서·무원칙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한다.
3.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 시 노동집단의 의견을 수렴한다.
노동안전위생 관리규제 및 내규 수립, 노동안전위생계획수립, 노동보호정책제도 및 근로자의 건강·안전보장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 사용자와 공모하기 위해 기관노조의 노동안전위생 활동경험 요약
4.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여러 활동을 조직한다. 노동력 경감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장비·기계·공업을 개선한 근로자에 대해 격려한다.
5. 노조간부 및 안전위생원을 위한 노동보호업무수행 훈련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력한다.

제22조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대한 기관노조의 권한

1.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관리규제·내규 설립을 위해 사용자와 공모한다.
2. 노동안전위생계획 수행여부, 근로자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 및 노동안전위생 정책제도의 시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노조 내 독립조사단을 조직

하거나 노동기관이 조직한 자율조사단에 참여한다.

3. 노동안전위생 관련 조치 시행하고 법률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직업병 방지를 위해 사용자에게 제안한다.
4. 산업재해조사에 참여하고, 노동기관 내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대한 조사조사단 결과보고회에 참석한다.

제7장

시행약관

제23조 시행효력

이 시행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1998년 10월 31일 경영생산기관 및 기업의 노동보호를 위한 노동사회보훈부-보건부-베트남노동총연맹간의 부처 간 시행규칙 14/1998/TTLT-BLĐTBXH-BYT-TLĐLĐVN은 폐지한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노동사회보훈부 및 보건부에 건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보건부 총리

(서명)

짱 꾸언 후언

노동보훈사회부 총리

(서명)

부이 홍 링

부록 제1번

기업 내 관리간부 및 관련부서의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관한 책임범위

(노동사회보훈부와 보건부의 2011년 1월 10일자 시행규칙

01/2011/TTLT-BLDTBXH-BYT에 붙임)

1. 분업감독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서의 책임(이하 '분업감독관'라 부른다)

- a) 신규고용직원 또는 이직자에 대해 근무시작 전 안전근로조치에 대한 훈련을 조직한다.
- b) 요구된 노동안전위생 시험에 통과하고 훈련을 마친 근로자를 업종에 맞게 배치한다.
- c) 노동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는 장비 및 인증되지 않는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d)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를 위한 기준·규범·규정·조치 시행을 위해 생산조장 및 권한 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재측을 수행한다.
- d) 노동안전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며, 분업조의 책임과 관련된 검사조사단과 생산조의 의견 및 조사에 따른 결점을 적시에 처리하며, 분업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한다.
- e) 규정에 따라 분업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산업재해는 즉시 보고한다.
- g) 노조의장과 협력하여 노동기관 내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안전위생원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h) 분업감독관은 수준이하의 근로자를 거부하고, 노동안전·노동위생·화재예방에 관한 규정을 채워반한 근로자에 대해 작업을 일시 중단시킬 권리가 있다.

2. 생산조장(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책임과 권한

- a) 안전근무 규정·조치의 엄수 및 개인보호장비·안전장비·응급장비의 올바른 사용관리를 위해 관리권한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내·재측·검사한다.

- b) 안전위생원과 협력해 생산과정에서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즉시에 처리하고 자율검사하여 노동안전위생을 보장하는 작업장을 조성한다.
- c) 해당 부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노동안전위생이 결여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산업재해 및 장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시 해결을 위해 상부에 보고한다.
- d) 노동생산 상태 점검회의에서 노동안전위생상태와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이행여부에 대해 평가·점검한다.
- d) 생산조장은 노동안전위생 기술 및 전공이 수준 이하인 근로자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조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발견했을 시 작업을 중단·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상부에 적시 보고한다.

3. 계획부서 또는 계획업무 담당간부의 임무

- a) 노동안전위생계획에 관한 경비·인력·원자재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노동기관 및 시행조직의 경영생산계획(또는 업무계획)에 산입한다.
- b) 노동안전위생계획에 제기된 업무내용이 진도에 맞게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안전부서와 협력해 평가·재측·감시한다.

4. 기술·전기부서 또는 기술·전기 담당간부의 임무

- a) 노동안전위생계획에 산입하기 위해 설비개선, 생산합리화, 안전기술·위생기술에 관한 조치를 연구한다. 안전기술·위생기술 관한 조치와 근로조건개선 수행을 관리·안내한다.
- b) 기계·장비·물질에 관련된 안전근무 규정·조치 및 사고발생시 응급처리방안들을 편찬·수정·보충·완성한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위생 교육자료를 편찬하는데 참여하고 노동기관 내 근로자를 위한 노동안전위생 훈련을 위해 노동안전부서와 협력한다.
- c)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정기검사에 참여하고 안전기술에 관련된 산업재해 조사에 참여한다.
- d) 노동안전위생부서와 협력하여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기계·장비·물자·중요물질을 관리·등록·검정하는데 참여한다.

5. 노동조직부서 또는 노동조직 담당간부의 책임

- a) 참모는 단위의 특징과 규모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위원회의 참가구성 및 화재예방·노동보호업무 수행간부에 대해 발안한다.
- b) 분업조 및 연관된 부서와 협력하여 산업재해 및 사고예방 훈련을 노동기관의 특징에 부합하도록 조직한다.
- c) 노동안전위생부서 및 분업조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노동보호제도를 시행한다. 노동안전위생훈련과 결합한 기술증진, 개인보호장비 구축, 근무시간, 휴식시간, 현물보상, 산업재해·직업병 보조금, 직업병, 사회보험 등
- d) 제출된 노동안전위생계획 내용 및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

6. 재정부서 또는 재정 담당간부의 책임

- a) 경영기간 내 노동기관의 총 경비예산 중에서 노동안전위생계획 경비예산을 세운다.
- b) 노동기관의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경비를 충분히·적시에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
- c) 현행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노동안전위생계획 수행경비를 결산한다.

부록 제2번

노동안전위생계획의 내용

(노동사회보훈부와 보건부의 2011년 1월 10일자 시행규칙

01/2011/TTLT-BLDTBXH-BYT에 붙임)

1. 안전기술과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법

- a) 기계, 설비, 공장, 산업재해, 사고위험 공장 및 지역을 가리고, 막고, 멈추고, 끄고, 켜기 위한 목적으로 장비·부속·공구를 제조·수리·구매
- b) 원자재 및 완성품 가격
- c) 낙뢰·감정 방지 시스템
- d) 색깔·빛·소리를 이용한 경고장비
- d) 표지판 설치
- e) 화재예방을 위한 장비 및 설비 생산·구매
- g) 근로자에 부합하는 작업장 조직
- h) 위해물질 및 화재발생 물질을 다루는 생산부와 창고를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
- i) 노동안전위생과 관련된 기계·장비·주요물질 검정
- k) 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치법

2. 노동위생기술·유해물질방지·노동조건개선·환경보고에 관한 조치법

- a) 통풍기, 분진 및 독기 흡진시스템 설치
- b) 고온 및 소음 방지하고 위해요소를 확산을 방지하며 통풍이 잘되게 한다
- c) 샤워장의 개조 및 설치
- d) 선풍기 및 독약처리기 설치
- d) 노동환경 측량기
- e) 위해폐기물 처리 실시

g) 화장실

h) 노동기관의 실제 상황에 맞는 기타 조치법

3. 개인보호장비 구매

a) 안전벨트, 방독마스크, 방한양말, 방수양말, 전열장화, 산성저항장화, 위생모, 보호헬멧, 방진마스크, 귀마개, 방사능 보호복, 절연복, 방한복, 절전복

b) 기관의 실제 살황에 맞는 기타 장비

4. 근로자의 건강관리

a) 채용 시 건강검진

b) 정기 건강검진

c) 직업병 발병 검진

d) 현물을 통한 영양보충

d) 근로자를 위한 요양 및 회복

5.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훈련·교육 선전

a) 사용자와 근로자를 위한 노동안전위생 훈련 조직

b) 노동안전위생 관련 전람회 참여 및 영화 상영

c) 우수 안전위생원을 위한 시험 조직

d) 노동안전위생 업무 강화방법에 관한 필기시험 조직

d) 노동안전에 관한 포스터·그림·판넬 설치, 노동안전위생관련 잡지 및 자료 구입

e) 노동기관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소식지 발행

g) 기관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기타 훈련 및 교육 실시

부록 제3번

자율검사의 내용·형식·조직

(노동사회보훈부와 보건부의 2011년 1월 10일자 시행규칙
01/2011/TTLT-BLDTBXH-BYT에 붙임)

1. 검사내용

- a) 다음과 같은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을 수행한다.
건강검진, 직업병 발병 검진, 근로시간, 휴식시간, 현물 보양,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통계·공표 등
- b) 안전에 관한 문서·목록·내규·규정·조치, 조사결과기록, 제안의견기록
- c) 제정된 안전 조치·규범·기준 시행
- d) 다음과 같은 기계·장비·공장·창고·작업장의 안전위생 상태
위험장소의 가리개, 안전기구의 공신력, 고온방지, 분진방지, 채광, 통풍, 배수 등
- d) 개인보호장비, 화재예방장비, 응급치료기 보관 및 사용
- e) 노동안전위생계획의 내용 시행
- g) 조사조사단의 제안 시행
- h) 노동안전과 관련된 장비·물자·주요물질 관리 및 위험위해요소 통제
- i) 노동안전위생 지식, 사고처리 가능여부, 근로자 응급치료
- k)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영양보충 조직
- l) 근로자의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제출된 의견 해소, 하급기관의 자율검사활동
- m)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책임관리,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군중운동
- n) 기관의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기타 내용

2. 검사형식

- a) 검사권한에 관련된 노동안전위생 내용 총체검사

- b) 노동안전위생 계획의 각 내용에 대한 특별검사
- c) 장기간 생산중단 후 검사
- d) 장마 및 태풍 전후 검사
- d) 사고 후 검사, 대수리 후 검사
- e) 경쟁심사를 위한 선발 또는 상기를 위한 정기검사
- g) 기관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기타 검사형식

3. 검사조직

효과적인 자율검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신중히 준비하고 엄격히 시행한다.

- a) 조사단 설립

기업단위 및 분업단위에서 자율검사를 할 때는 필수로 조사단을 조직하고, 조사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동안전위생 기술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노동기관 및 노조소속 책임자여야 한다.
- b) 조사단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검사일정을 확인한다.
- c) 생산조 또는 생산단위에게 검사일정을 통보한다.
- d) 검사 진행
 - 분업감독관(분업 단위에서 검사 시)은 조사단에게 노동안전위생 업무시행 현황에 대해 요약보고하고, 분업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해결방법에 대한 견해를 제출한다.
 - 모든 생산부서와 창고는 조사받아야 한다.
- d) 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단은 조사받은 단위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작성하고, 책임범위 내에 있는 단위의 해결문제를 작성하여 조사보고서에 기록한다.
 - 조사단장과 조사받은 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보고서에 서명해야한다.
- e) 조사 후 결과처리
 - 조사받은 단위는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문제해결방안을 수립한 뒤 조사단에게 보내어 지속관찰 할 수 있게 해야한다.
- g) 기업단위 및 분업단위에서의 자율검사기간

경영생산의 특징에 따라 사용자는 기업단위 및 분업단위에서의 자율검사

기간과 자율검사형식을 규정한다. 그러나 전체정기검사는 기업단위에서는 1회/반기(6개월), 분업단위에서는 1회/분기(3개월)시행되어야 한다.

h) 생산조에서의 자율검사

생산조에서는 매일 근무시작 시, 새로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자율검사가 이뤄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야한다.

- 조에 속한 각 개인들은 매일 근무시작 시 기계·장비·전기·생산장·화재예방도구·응급치료기구 등의 노동안전위생 상태를 점검해야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결점을 발견하였거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발견하였을 시 조장에게 보고한다.
- 조장은 조원이 발견한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위험요소에 대해 재조사할 임무가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 및 안내를 해야 한다.
- 생산조 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실시한 후 건의서 작성 및 분업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k)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검사보고서 및 건의서 작성

-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검사보고서 및 건의서는 노동안전위생 자율검사활동의 기초이며, 노동안전위생상태에 관한 하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검사임무 수행을 실시하도록 하는 생산관리간부의 제도이며, 상존하는 결점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검사보고서 및 건의서 작성은 기업 내 모든 단위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검사보고서 및 건의서는 간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조사를 위하여 현행 문서관리제도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
- 반영된 건의사항이나 수락된 건의사항은 기록 및 서명을 받아 책임을 명시해야한다.

부록 제4번

기업의 노동안전위생 업무보고 양식

(노동사회보훈부와 보건부의 2011년 1월 10일자 시행규칙

01/2011/TTLT-BLDTBXH-BYT에 붙임)

소재지: _____

기업명: _____

_____시 노동사회보훈소에 제출함

노동안전위생보고

보고기간: _____년 _____

기업명¹: _____

업종²: _____

형태³: _____

직속관리기관⁴: _____

주소(시, 군, 구, 거리명, 지번): _____

순서	보고기준	단위	번호
1	근로자		
	1.1. 총 근로자 수	명	
	- 그 중 총 여성근로자 수	명	
	1.2. 직접 근로자 수	명	
	- 그 중 + 총 여성근로자 수	명	
	+ 위험·위해·과중업무 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노동조건 4종, 5종, 6종)	명	
2	산업재해		
	- 총 산업재해 발생건수	건	
	+ 그 중 사망사고 건수	건	
	- 산업재해를 입은 총 근로자 수	명	
	+ 그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수	명	

	- 산업재해 관련 총 경비 (응급처치, 치료, 휴일 중 급여지급, 배상금, 보상금 등)	백만동	
	- 재산손실(손실액)	백만동	
	- 산업재해로 인한 휴일 수	일	
3	직업병		
	- 보고일 기준으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수	명	
	그 중 최근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수	명	
	- 직업병으로 인한 휴일 수	일	
	- 직업병으로 인해 정년퇴직 전 퇴직한 근로자 수	명	
	- 연중 직업병으로 인해 발생한 총 경비 (노동안전계획에서 채산되지 않은 지출: 치료비, 휴일 중 급여지급, 배상금, 보상금 등)	백만동	
4	근로자 건강분류 결과		
	+ 1종	명	
	+ 2종	명	
	+ 3종	명	
	+ 4종	명	
	+ 5종	명	
5	노동안전위생 훈련		
	- 훈련받은 사용자 수/총 사용자 수	명/명	
	- 훈련받은 노동안전위생 간부 수/총 노동안전위생 간부 수	명/명	
	- 훈련받은 안전위생원 수/총 안전위생원 수	명/명	
	- 안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수/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엄중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총 근로자 수	명/명	
	- 훈련받은 총 근로자 수	명	
	- 총 훈련 경비 (본 도표 10번 항목 선전, 훈련 경비 참조)	백만동	
6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엄중관리가 요구되는 기계·장비		
	- 총 계	개	
	- 그 중 등록된 개수	개	
	+ 검증받은 개수	개	
7	근로시간, 휴식시간		
	- 평균 추가근무 시간/일, 명	시간	
	- 평균 추가 근무일/6개월(또는 1년)/1명	일	
8	현물을 통한 독해방지도양		
	- 총 인원	명	
	- 총 경비 (본 도표 10번 항목 건강관리 비용 참조)	백만동	
9	노동환경 측량기 상태		
	- 노동환경 측량기 개수	개	
	- 기준 미달 측량기 개수	개	
	- 허가 기준 미달 측량기 개수/총 측량기 개수 + 온도	개/개	

	+ 분진 + 소음 + 진동 + 유독가스 + ...		
10	노동안전위생 계획 수행 경비		
	- 안전기술조치	백만동	
	- 위생기술조치	백만동	
	- 개인보호장비	백만동	
	- 노동자건강관리	백만동	
	- 선전, 훈련	백만동	
	- 기타	백만동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단위대표

(서명, 인감)

각주설명

- 기업명(1)과 업종(2):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기입
- 형태(3): 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따라 기입
 - 국영기업
 - 유한책임회사/구성원 1명의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국가소유지분이 51%이상인 주식회사
 - 개인기업
 - 외국 투자자본 기업/외국자본 100% 기업
 - 합명회사
 - 협회
 - 기타
- 직속관리기관(4):
 - 그룹사에 속하는 기업일 경우 그룹명이나 모회사명을 기입
 - 총공사에 속한 단위일 경우 총공사명을 기입

- 지역 사무소·조직·지부 직속기관일 경우 사무소·조직·지부명 기입
- 부·부처의 직속기관일 경우 부·부처명을 기입
- 상기 관리기관에 속하지 않을 경우 기입하지 않음

부록 제5번

지방기관의 노동안전위생 업무보고 양식

(노동사회보훈부와 보건부의 2011년 1월 10일자 시행규칙

01/2011/TTLT-BLDTBXH-BYT에 붙임)

인민위원회 소재지(도, 시): _____

노동사회보훈소: _____

노동사회보훈부에 제출함

노동안전위생보고

_____년

순 서	기준 (보고기간 내)	단위	형태							
			국 영 기 업	유 한 책 임 회 사	주 식 회 사	개 인 회 사	F D I 기 업	협 회	사 업 단 위	기 타
1	보고단위 수	단위								
2	근로자									
	2.1. 총 근로자 수	명								
	그 중 + 여성근로자	명								
	2.2. 직접 근로자	명								
	- 그 중 + 여성근로자	명								
	+위험·위해·과중업무 조건 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근로 조건 4종, 5종, 6종)	명								
3	산업재해									
	- 총 사고 수	건								

	그 중 사망사고 수	건								
	- 산업재해 총 부상자 수	명								
	그 중 사망자 수	명								
	- 산업재해 총 경비	백만동								
	-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 (손 해액)	백만동								
	- 산업재해로 인한 휴일	일								
4	직업병									
	- 보고시점 직업병에 걸린 총 근로자 수	명								
	그 중 최근 직업병에 걸린 근 로자 수	명								
	- 직업병으로 인한 휴일 수	일								
	- 직업병으로 인해 정년퇴직 전 퇴직한 근로자	명								
	- 연중 발생한 직업병으로 근로자에게 지출된 총 경비	백만동								
5	근로자 건강분류 결과									
	+ 1종	명								
	+ 2종	명								
	+ 3종	명								
	+ 4종	명								
	+ 5종	명								
6	노동안전위생 훈련									
	-훈련받은 사용자 수/총 사 용자 수	명/명								
	- 훈련받은 노동안전위생 간 부 수/총 노동안전위생 간부 수	명/명								
	- 훈련받은 안전위생원 수/ 총 안전위생원 수	명명/명 /명								
	- 안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수/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엄중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총 근로자 수	명/명								
	- 훈련받은 총 근로자 수	명								
	- 총 훈련 경비	백만동								
7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엄중관 리가 요구되는 기계·장비									
	- 총 계	개								
	- 등록된 개수	개								

시 행 규 칙

노동위생·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에 관한 안내

2002년, 2006년, 2007년에 수정·보완된 1994년 6월 23일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노동법의 몇 가지 조항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 시행령
06/CP을 수정·보완한 1995년 1월 20일 시행령 06/CP와 2002년 12월 27일 시행령
110/2002/ND-CP에 근거하여,
보건부의 기능·임무·권한·조직구조에 대해 규정한 2009년 12월 27일 시행령 188/2009
ND-CP에 근거하여,
보건부의 기능·임무·권한·조직구조에 대해 규정한 2009년 12월 27일 시행령 188/2009
ND-CP의 제3조에 대해 수정·보완한 2010년 3월 9일 시행령 22/2010/ND-CP에 근거
하여,
보건환경관리국 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개정범위

이 시행규칙은 노동위생·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시행경비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노동위생관리’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 노동환경 및 조건에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다. 노동조건개선 조치법 실행, 직업병 방지, 근로자의
노동능력 강화를 위한 것들을 포함한다.
2. ‘노동위생’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미기후(온도, 습도, 풍속), 물리(복사열, 광선, 소음, 진동, 방사선, 전자장),

분진, 화학, 발병미생물, 노동심리·생리, 에코노미, 노동환경에 관한 기타 요소

3. ‘직업병’이란 직업과 관련하여 위해한 생산·근로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대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4. ‘노동환경 검사·측정 시행단위’란 노동환경을 검사·측정 할 수 있는 물질·간부능력·장비를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하 ‘노동환경 검사·측정 시행단위’라 부른다)
5. ‘부·부처 또는 중앙직할시·성의 근로자건강 및 환경관리 단위’는 근로자건강 및 환경관리센터 또는 중앙직할시·성 보건예방센터(근로자건강 및 환경관리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곳)와 부·부처의 보건업무 관리책임의 의무를 가진 단위(이하 ‘부·부처 보건’이라 줄여 부른다)를 말한다.

제3조 관리원칙

1. 모든 노동기관은 노동위생에 관한 관리문서, 근로자 건강 및 직업병 관리문서를 정기적으로 추가·보충·작성해야한다.
2. 노동환경 검사·측정은 이 시행규칙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단위에 의해서 실시된다.
3. 노동위생·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는 분급기관 및 영토에 따라 관리되는 부서의 협력기관에서 시행된다.

제2장

노동위생·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

제4조 노동위생관리 내용

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이 시행규칙 부록 제1번의 형식에 따라 노동위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다.
 - a) 부분1.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기관의 일반적인 현황

조직, 직원, 규모, 임무, 사용 중인 기술 과정 요약, 주변환경 위생, 노동환경 위생, 노동기관의 보건기관,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기계·장비·주요물질에 관한 통계목록

b) 부분2. 노동기관 조직의 노동위생

c) 부분3. 노동환경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는 설비의 통계

d) 부분4. 정기 노동환경 검사등록

2. 노동환경 조사·측정 수행 및 방지·처리법에 관한 예상기간을 담은 연간 노동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이 시행규칙 부록 제2번 양식에 따라 노동위생 요소를 조사·측정한다.

4. 노동기관의 설립·건설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건강작용평가보고 수립을 해야 한다.

제5조 근로자건강관리 내용

1. 채용검진관리

a) 채용 전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와 근로자의 건강에 부합하는 업무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건부의 2007년 11월 21일자 시행규칙 13/2007/TT-BYT의 부록 제2번에 따른다.

b) 근로자의 채용건강관리문서는 이 시행규칙에 수록된 부록 제2번의 1번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정기건강검진

a) 연간 정기검진은 근로자 및 연습·수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반기당 1회 정기건강검진은 노동사회보훈부장의 규정에 따라 위험·위해·과중업무 및 특별위험·위해·과중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b) 정기건강검진 과정 및 정기건강검진 기록은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건부의 2007년 11월 21일자 시행규칙 13/2007/TT-BYT의 부록 제3번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c) 근로자의 질병상태 통계 및 관리는 이 시행규칙의 부록 제3번의 2번, 3번 양식에 따른다.

d) 근로자의 건강관리문서 작성은 이 시행규칙의 부록 제2번의 4번, 5번, 6

번 양식에 따른다.

3. 직업병검진

- a) 직업병 발병요소가 있는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발병 검진
- b) 직업병을 관찰하는 정기 발병 검진
직업병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건부의 2006년 11월 10일자 시행규칙 12/2006/TT-BYT의 부록 제1번, 제2번, 제3번의 수속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c) 이 시행규칙의 부록 제3번의 7번, 8번 및 부록 제4번의 양식에 따라 직업병관리문서를 유지 및 작성하며, 근로자가 사직·퇴직·이직하기 전까지 보관한다.

4. 산업재해 응급처리

- a) 노동기관의 활동 및 조직에 부합하는 응급처리 수단이나 장비를 포함하는 산업재해 응급처리 방안을 수립한다.
 - b) 노동위생 및 노동안전 훈련업무 안내에 대한 노동사회보훈부의 2005년 12월 29일자 시행규칙 37/2005/TT-BLDTBXH와 중소기업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부의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에 수록된 근로자 초기응급처치 및 노동위생에 관한 훈련내용 항목을 담은 부록 제1번의 내용에 따라 매년 안전위생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조직한다.
 - c) 이 시행규칙의 부록 제5번에 따라 노동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사직·퇴직·이직하기 전까지 보관한다.
5.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규정에 따라 노동력 손실 정도를 검정하기 위해 의학감정을 받는다.

제3장

노동환경 조사·측정 단위에 대한 규정

제6조 노동환경 조사·측정 단위의 조건

1. 시설조건: 노동환경을 조사·측정을 시행하는 단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접수부, 분진·물리요소 검사부, 화학·유독물질 검사부, 미생물 검사부, 근로자 심리·생리부, 에코노미부
2. 설비조건: 이 시행규칙의 부록 제6번의 안내에 따른다.
3. 인사조건: 노동환경을 조사·측정하는 단위의 직원은 수료증, 조사형태에 부합하는 양성과정 증명서, 노동환경검사·근로건강·직업병에 관한 훈련을 이수한 확인서를 보유해야 하며 이 시행규칙 부록 제6번에 따른 노동환경 조사·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한다.

제7조 노동환경 조사·측정 단위의 공포 문서 및 수속

1. 노동환경을 조사·측정 공포 문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 a) 노동환경을 조사·측정 공포 문서는 이 시행규칙의 부록 제7번에서 규정된 양식에 따른다.
 - b) 인사신고서, 지층설계등본, 노동환경 조사·측정 단위의 장비목록은 이 시행규칙 부록 제7번에서 규정된 양식에 따른다.
2. 노동환경 조사·측정을 정식시행하기 15일전에, 노동환경 조사·측정단위는 조건을 충족한 조사·측정 공포 문서를 이 시행규칙의 제7조 항목1번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부(보건환경관리국) 및 단위소재지의 중앙직할시·성 보건소(의학업무를 보는 사무소)에 보내야한다.

제4장

문서관리와 보고제도

제8조 문서관리

1. 노동위생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 및 보관한다.

- a) 노동기관에 1부 보관
 - b) 소재지의 노동환경을 조사·측정하는 중앙직할시·성 환경 및 근로자건강관리 단위, 부·부처의 관리권한에 속한 보건관리 단위에 1부 보관
2. 노동환경 조사·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작성 및 보관한다.
- a) 노동기관에 1부 보관
 - b) 이 항목에서 규정하는 노동기관의 노동환경 조사·측정단위에 1부 보관
 - c) 소재지의 노동환경을 조사·측정하는 중앙직할시·성 환경 및 근로자건강관리 단위, 부·부처의 관리권한에 속한 보건관리 단위에 1부 보관
3. 근로자 질병·건강관리문서, 개인직업병문서, 산업재해응급처치문서는 근로자가 사직·퇴직·이직하기 전까지 보관한다.

제9조 보고제도

1.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전에 노동기관은 이 시행규칙 부록 제8번에 따라 기관의 보건활동보고를 완료한 뒤 보건센터 또는 성 내 시군구 보건예방센터(이하 ‘지역보건센터’라고 부른다), 부·부처의 관리권한에 속한 보건관리 단위에 보낸다.
2. 매년 6월 25일과 12월 25일전에 지역보건센터는 부록 제9번에 따라 총합한 뒤 중앙직할시·성의 노동 및 환경관리 단위에 보고한다.
3.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전에 중앙직할시·성의 노동 및 환경관리 단위와 부·부처 보건관리 단위는 관리 권한에 속한 부·부처와 지방의 노동위생관리 상태, 근로자건강관리, 직업병을 이 시행규칙 부록 제10번에 따라 총합한 뒤 보건부(보건환경관리국)에 보낸다.

제5장 시행책임

제10조 근로자의 책임

1. 사용자가 조직한 정기검진과 직업병검진에 충실히 참여한다.
2. 의사의 치료와 검진지시를 준수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1. 지역보건센터나 부·부처 관리 단위 또는 중앙직할시·성 노동환경건강관리 단위와 협력하여 노동위생문서 작성, 노동환경 조사·측정 계획, 근로자의 건강 검진 및 직업병(발병 시) 검진을 조직한다.
2. 근로자 질병·건강 및 노동위생에 관한 문서, 개인직업병 문서, 산업재해 응급처리 문서, 근로자의 직업병 경과 및 건강관찰 문서를 관리한다.
3.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배상금, 건강상태 감정 수속절차를 완료한다.
4.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노동위생문서작성, 노동환경 조사·측정, 정기건강검진, 직업병 치료·검진, 산업재해 응급처치 비용을 계산한다.

제12조 노동환경 조사·측정 시행단위의 책임

1. 사용자 및 부·부처 관리 단위 또는 중앙직할시·성 노동환경건강관리 단위와 협력하여 요청이 있을 시 노동환경 조사·측정 계획을 수립한다.
2. 단위가 시행한 노동환경 조사·측정 결과에 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3. 현행규정에 따라 노동환경 조사·측정 결과를 보관·유지한다.

제13조 성 직속 시군구 보건센터 또는 성 직속 시군구 보건예방센터의 책임

1. 관리범위에 속한 노동기관과 협력하여 노동안전문서를 작성한다.
2. 관리범위에 속한 노동안전관리 수행, 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를 지도·검사한다.
3. 문서를 총합하고 근로건강보호와 노동위생관리 업무에 대해 중앙직할시·성 관리단위에 보고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병을 관리한다.

제14조 중앙직할시·성 근로건강 및 환경 보호센터 또는 중앙직할시·성 보건예방센터의 책임

1. 노동기관과 협력하여 이 시행규칙 제4조 항목1번에 따라 노동위생문서를 작성한다.
2. 관리범위에 속한 노동위생관리 수행, 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를 지도·검사한다.
3. 문서를 총합하고 노동위생관리업무와 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업무에 대해 중앙직할시·성 보건소와 보건환경관리국(보건부)에 보고한다.
4. 보건예방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들과 협력하여 근로자건강, 직업병, 근로환경을 관리를 위한 훈련반을 조직한다.

제15조 중앙직할시·성 보건소의 책임

1. 관리범위에 속하는 직업병 및 노동위생관리업무를 조직·지도한다.
2. 매분기 및 수시로 노동환경 조사·측정 업무를 실시하는 단위의 활동을 조사·평가하여 등록된 문서와 비교하여 노동환경 조사·측정 업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위의 경우 명단에서 퇴출시킬 것을 보고·건의한다.
3. 보건예방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들 및 의과대학들과 협력하여 근로자건강, 직업병, 근로환경을 관리를 위한 훈련반을 조직한다.

제16조 보건예방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들 및 의과대학들의 책임

1. 관리범위에 속하는 노동환경 조사·측정 단위에 대한 전공기술에 대해 지도·검사한다.
2. 노동환경 조사·측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직원들에 대해 직업병, 근로건강, 노동환경 조사·측정 기술에 대한 훈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양성과정을 조직한다.
3. 필요시 노동환경 조사·측정 업무를 실시하는 단위의 공포문서를 함께 검토한다.
4. 노동환경과 직업병방지를 위해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기술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제17조 보건부 보건환경관리국의 책임

1. 관리범위에 속하는 직업병, 근로자건강관리, 노동위생관리업무를 조직·지도한다.
2. 노동환경 조사·측정 업무조건을 만족하는 단위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보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전국적 범위의 노동환경 조사·측정 업무를 실시하는 단위의 활동을 합동검사·조사한다.
4. 근로자건강, 직업병, 근로환경을 관리를 위한 훈련반을 조직한 보건예방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들 및 의과대학들을 지도한다.
5. 연관돈 단위들과 협력하여 이 시행규칙을 전개·안내한다.

제5장 시행효력

제18조 시행효력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1996년 10월 21일 보건부의 노동위생관리업무와 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은 이 시행규칙이 효력을 지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996년 10월 21일 보건부의 노동위생관리업무와 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은 이 시행규칙이 효력을 지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보건부(보건환경관리국)에 건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보건부 총리

정 꾸언 후언

부록 제1번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문서번호: _____/노동위생
(단위 작성문서에 따름)

문서
노동위생

노동기관명: -----
생산분야: -----
주관단위: -----
주소: -----
전화: _____ Fax: -----
E-mail: _____ 홈페이지: -----
문서관리인: -----

문서작성단위: -----
주소: -----
문서작성일: -----
전화: _____ Fax: -----
E-mail: _____ 홈페이지: -----
문서작성인: -----

년도: _____

부분 I 일반현황

1. 노동기관명: -----
 - 관리기관: -----
 - 주소: -----
 - 생산품 (주요생산품): -----

 - 설립년도: -----
 - 총 근로자 수: -----
 - 직접생산 근로자 수: -----
 - 위해·위험요소를 다루는 근로자 수: -----
2. 규모 (상품산출량):

3. 공업과정요약:

4. 주변 환경위생:
 - 배출구에서 거주지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의 간격: -----
 - 배출구에서 생활수원지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의 간격: -----
 - 노동기관 내 송수시스템: -----

 - 지금까지의 홍수와 비교한 지표면 높이 ----- 미터
 - 그린벨트: -----
 - 연중 원료, 연료, 에너지사용 사용량:
 - + 원료: -----
 - + 연료: -----
 - + 에너지: -----
 - 24시간 동안 배출되는 공업/산업 물질(액체, 고체, 기체, 분진, 미생물)의 분량 및 종류

 - 공업/산업 배출물 처리장비 공정

- 기타 공정:

+ 위생공정 (평균 1 정화조/근로자 수/1 교대): -----

+ 샤워실 (평균 1 샤워기/근로자 수/1 교대): -----

+ 교대간 휴식: 없음 [] 있음 [] 장소 수: -----

+ 식당: 없음 [] 있음 [] 장소 수: -----

5. 노동환경위생

- 노동기관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오염원, 영향을 끼치는 지역)

- 노동환경의 위해요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6. 보건조직:

- 보건예방조직: 있음 [] 없음 [] 계약: -----

- 병상: 있음 [] 없음 [] 수량 []

- 총 보건간부 수: [] 그 중: 의사: [] 간호사: []

간호원: [] 기타: []

- 보건 업무를 하는 기관 (계약단위일 경우 주소 등 구체적으로 설명):

- 약, 수단,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 설비:

- 응급처치를 위한 조직 방안:

7.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기계·설비·주요물질 통계:

부분 2
근무지역 및 분업단위의 노동위생
 (각 근무지역 및 분업단위당 1장)

1. 근무지역명 및 분업단위명: -----
2. 규모와 임무: -----

3. 변경, 개조, 확장내용: -----

4. 노동환경 및 유해요소를 접하는 근로자 수

유해요소	Tổng số mẫu	Số mẫu vượt TC VSLĐ	접촉 근로자	그 중 여성근로자	비고
미기후					
분진요소 - 중량분진 - 호흡분진					
소음					
진동					
광선					
과중위험, 신경계긴장					
화학요소 _____ _____					
미생물요소 _____ _____					
기타 요소 _____ _____ _____					

부분 3
노동환경위생을 보장하는 설비들의 통계
(각 근무지역 및 분업단위당 1장)

년	방법	노동환경위생 설비와 종류	활동효과
	통풍		
	채광		
	소음, 진동방지		
	진분방지		
	유독가스방지		
	미생물방지		
	기타		

부분 4
정기 노동환경검사등록
검사등록 차수:

- 검사년월일:
- 등록한 근무지역, 분업단위:
.....
- 검사받은 요소:
.....
- 검사받지 않은 근무지역, 분업단위:
.....

노동기관감독
(서명, 인감)

검사기관
(서명, 인감)

정기 노동환경검사등록
검사등록 차수:

- 검사년월일:
- 등록한 근무지역, 분업단위:
.....
- 검사받은 요소:
.....
- 검사받지 않은 근무지역, 분업단위:
.....

노동기관감독
(서명, 인감)

검사기관
(서명, 인감)

노동위생문서

부분 1. 일반현황

1. 조직
2. 규모
3. 공업과정요약
4. 주변환경 위생
5. 노동환경 위생
6. 보건조직
7.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기계·설비·주요물질 통계

부분 2: 근무지역 및 분업단위의 노동위생

부분 3: 노동환경위생을 보장하는 설비 통계

부분 4: 정기 노동환경 검사 등록

참고:

- 노동위생문서는 노동환경관리를 위해 이용되며, 근로조건개선계획수립, 산업재해 및 직업병방지를 위한 기초이자 근로자의 직업병 감소를 위한 절차이다.
- 정기 노동환경 검사는 노동환경 검사·측정 조건을 충분히 갖춘 단위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 시행규칙 제3장에서 규정됨)

부록 제2번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노동환경 조사·측정 결과

(매년 증보 후 부록 제1번의 노동위생문서와 함께 유지보관한다)

년 월 일

_____에서

_____년

성, 도시
노동환경검사·측정기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____/노동환경

____년 ____월 ____일

2007년, 2006년, 2002년에 수정보완된 1994년 6월 23일 노동법, 1995년 1월 20일
정부총리 시행령 06/CP, 2002년 12월 27일 시행령 110/2002/ND-CP,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 시행.

(노동환경검사·측정시행기관명): -----

주소: -----

전화: -----

대표자: -----

-----에서 노동환경검사·측정을 수행하였음.

20__년 __월 __일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기후, 분진, 광선, 유독가스, 방사선, 전자장 지수를
측정함:-----

측정장비:

+ 미기후측정기: -----

+ 광선측정기: -----

+ 소음측정기: -----

+ 분진측정기:-----

+ 방사선측정기: -----

+ 전자장측정기: -----

+ 유독가스측정기: -----

기준은 현행규정을 따랐으며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I. 미기후요소 (실제 측정값 기입)

측정시점의 계절:

허가기준		온도 (°C)		습도 (%)		풍속 (m/s)	
순서	측정위치	노동생기 위기준 충족 건본 수	노동생기 위기준 미충족 건본 수	노동생기 위기준 충족 건본 수	노동생기 위기준 미충족 건본 수	노동생기 위기준 충족 건본 수	노동생기 위기준 미충족 건본 수
총 계							

II. 물리요소 (실제 측정값 기입)

1. 광선 (Lux)

허가기준 (정확도에 따라 노동분류에 따라)			
순서	측정 위치	노동위생기준 충족 건본 수	노동위생기준 미충족 건본 수
총계			

2. 소음 (dBA) (실제 측정값 기입)

[illegible]

측정결과 총합: 총 소음 건본 수: _____

노동위생기준 초과 총 건본 수: _____

3. 진동 (실제 측정값 기입)

[illegible]

측정결과 총합: 총 소음 건본 수: _____

노동위생기준 초과 총 건본 수: _____

III. 종류별 분진 (실제 측정값 기입)

1. 규소 함유 분진

[illegible]

측정결과 총합: 총 소음 건본 수: _____

노동위생기준 초과 총 건본 수: _____

V. 기타 요소 (실제 측정값 기입)

요소명							
허가기준							
순서	측정위치	노위기 동생준 충족 건본 수	노위기 동생준 미충 족수	노위기 동생준 충족 건본 수	노위기 동생준 미충 족수	노위기 동생준 충족 건본 수	노위기 동생준 미충 족수
총계							

노동환경 조사·측정 결과 총합

순서	조사·측정 요소	총 건본 수		노동위생기준 충족 건본 수		노동위생기준 초과 건본 수	
1	온도						
2	습도						
3	풍속						
4	광선						
5	분진	규소	기타	규소	기타	규소	기타
	- 전체 분진						
	- 호흡 분진						
6	소음						
7	진동						
8	유독가스						
	- _____						
	- _____						
	- _____						
	...						
9	방사선						
10	자장						
11	기타요소						
	- _____						
	- _____						
	- _____						
	...						
	총합계						

해결방안 권고

1. 노동조직에 관한 해결방안

- -----
- -----
- -----
- -----

2. 기술조치에 관한 해결방안

- -----
- -----
- -----
- -----

3. 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해결방안

- -----
- -----
- -----
- -----

4. 기타 해결방안

- -----
- -----
- -----
- -----

허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단위는 2002년, 2006년, 2007년에 수정보완된 1994년 6월 23일 노동법의 규정 및 1995년 1월 20일 시행령 06/CP, 2002년 12월 27일 시행령 110/2002/ND-CP의 규정에 따라 상기 해결방안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다.

측정기관장
(서명 및 인감)

부록 제3번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근로자 질명 및 건강관리 문서

노동기관명: -----

주관부: -----

주소: -----

전화: ----- Fax: -----

E-mail: ----- 홈페이지: -----

연락가능인: -----

_____ 년

양식 1: 채용검진관리

날짜	검진인원	총계	건강분류				
			I	II	III	IV	V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양식 2: 분기별 질병 현황

1. 분기 중 병가인원 수: -----
2. 분기 중 총 병가휴일 수: -----
3. 분기 중 진찰을 요하는 병 종류:
 - 3.1. 분기 중 총 진찰횟수: -----
 - 3.2. 그 중 다음과 같은 병에 걸린 적이 있는 경우:

순서	질병 종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득병	사망	득병	사망	득병	사망	득병	사망
1	결핵								
2	폐암								
3	급성 비염, 비강염, 후두염								
4	만성 비염, 비강염, 후두염								
5	급성 기관지염								
6	만성 기관지염								
7	폐렴								
8	기관지 알레르기								
9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위장염								
10	내분비								
11	정신병								
12	신경계								
13	눈								
14	귀								
15	심맥								
16	위								
17	간								
18	신장								
19	산부인과/여성 수								
20	유산/임신한 여성 수								
21	피부								
22	관절								
23	직업병								
24	말라리아								
25	기타 질병 (구체적 기재)								
	-								
	...								
26	산업재해 노동자 수								
	총합계								

양식 3: 병, 휴업, 직업병 현황

기간		병				산업재해				직업병			
분기	월 (1)	인원 (2)	비율 % (3)	일수 (4)	비율 % (5)	인원 (6)	비율 % (7)	일수 (8)	비율 % (9)	인원 (10)	비율 % (11)	일수 (12)	비율 % (13)
1분기	1												
	2												
	3												
2분기	4												
	5												
	6												
3분기	7												
	8												
	9												
4분기	10												
	11												
	12												
합계													

비고:

- (3) 행은 전체 종업원 간부와 비교율
- (7) 행은 전체 직접 생산종업원 간부와 비교율
- (5), (9), (13) 행은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일수와 비교율
- (11)은 위해요소와 접촉하는 종업원수와 비교율

양식 4: 정기건강검진을 통한 종업원 건강관리

[illegible]

양식 5: 만성질환 관리 (*)

소속	환자명	병명	상태	치료방법

(*) 대형 노동기관에 많은 수의 만성질환환자가 있을 경우 각 병에 따라 만성질환관리를 할 수 있음.

양식 6: 각 병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병명*: -----

소속	환자명	나이, 성별		근속 년수	상태	치료방법
		남	여			

(*) 각 병마다 개별 1장에 기록

양식 7: 직업병 관찰

날짜	병명	총 진찰 수	의심되는 수	진단받은 수	감정받은 수	등록된 수
1	2	3	4	5	6	7

양식 8: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 명단

[illegible]

부록 제4번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개인직업병 문서

직업병에 걸린 환자명:-----

병명:-----

발병일 년 월 일

근무단위: 조: 팀: 분업, 지역:-----

노동기관:-----

_____ 년

환자명:-----남 [] 여 []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출생지:-----

거주지:-----

위험·위해·과중업무 조건에서 근무: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직업, 업무:-----

근무단위: 조: 팀: 분업, 지역:-----

근로조건 (위험·위해·과중업무에 대해 상세히 기술):

의학검정위원회의 결론: ____년 ____월 ____일

노동능력 감소 정도:

보조금 지급일 ____년 ____월 ____일 보조금 지급액:_____

기타 질병:

개인직업병 관찰표

재검진 날짜	질병 상태	치료 경과	요양시간 기능회복	근로 환경	재검전	요양치료결과
1	2	3	4	5	6	7

부록 제5번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산업재해 응급처치 문서

노동기관명: -----
주관부: -----
주소: -----
전화: ----- Fax: -----
E-mail: ----- 홈페이지: -----
연락가능인: -----
문서작성인: -----

_____ 년

산업재해 응급처치 문서

날짜	순서	산업재해자명	나이, 성별		산업재해 시간	응급처치 시간	재해자 상해 상태	산업재해 원인	응급처치 대처	휴업기간	건강손실 정도 감정 결과
			남	여							

부록 제5번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노동환경 조사·측정능력과 물질기관 및 장비에 관한 규정

순서	내용				수량
I	물질기관				
1)	행정접수부 및 예비견본부				01
2)	분진 및 무기화학 검사부				01
3)	생화학, 독성물질 및 미생물 검사부				01
4)	노동심리생리 및 에코노미부				01
II	일반장비				
1)	문서보관함				02
2)	책걸상세트				02
3)	컴퓨터책걸상세트				01
4)	컴퓨터				01 세트
5)	테이블보				04 세트
6)	공구건조함				01
7)	의학용구소독기				01
8)	검사부의 규정을 걸어놓기 위한 보드				02
9)	소독: 증류수, 정수, 알콜, 요오드, 비누...				보건부규정에따름
10)	보호기구: 마스크, 옷, 모자, 장갑,...				
III.	노동환경 조사·측정 검사장비				
순서	장비명	수량	순서	장비명	수량
1)	로베르발 저울 1,0g	01 세트	19)	중량분직측정기	01 세트
2)	기술 저울 100 mg	01 세트	20)	호흡분진측정기	01 세트
3)	냉장고	01	21)	카타온도측정계	01 세트
4)	보온온	01	22)	미생물현미경	01 세트
5)	소형건조기 250°C	01	23)	소음측정기	01 세트
6)	전기압력기	01	24)	아스만습도계	01 세트
7)	원심분리기	01 세트	25)	대기견본추출기	01 세트

8)	진공청소기	01 세트	26)	유독가스측정기	01 세트
9)	광선측정기	01 세트	27)	진동측정기	01 세트
10)	방사선측정기	01 세트	28)	발전기	01 세트
11)	습도측정기	01 세트	29)	개인측정기	01 세트
12)	풍향측정기	01 세트	30)	전자장측정기	01 세트
13)	미기후측정기	01 세트	31)	검압계	01 세트
14)	자동습도측정기	01 세트	32)	시험관꽃이	충분한양
15)	신체온도측정기	01 세트	33)	슬라이드, 디스크, 유리관, 비중병, 칼데기	충분한양
16)	신체면적측정기	01 세트			
17)	에너지소모측정기	01 세트			
18)	전자분진측정기	01 세트			

* 부록 제6번에서 규정한 장비들을 충분히 비축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노동환경 조사·측정능력과 물질기관 및 장비를 보유한 의학기관과 계약을 통해 협력가능하다.

Ⅳ 노동환경 조사·측정 검사 시행기술 전문능력				
1)	미기후	- 온도		*
		- 습도		*
		- 풍속		*
		- 에너지소모		*
2)	물리요소	- 광선		*
		- 소음		*
		- 진동		*
		- 전자장		*
		- 방사선		*
3)	분진종류	- 전체분진		*
		- 호흡분진		*
		- 분진 중 규소함량 정량		*
4)	유독가스	- 대기 건본 추출		*
		- 유독가스 검사		*
5)	노동심리생리 및 에코노미	- 업무부담 평가		*
		- 심리적스트레스정도 평가		*

부록 제7번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단위명 _____
성, 도시 _____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____/____

_____년 ____월 ____일

노동환경 조사·측정 단위의 장비·간부능력 공포 및 신고서

단위명:

주거래소 주소:

전화:

Fax:

E-mail:

홈페이지:

1. 장비 및 인력신고

1.1. 노동환경 조사·측정 시행단위에 근무하는 간부명단

순서	성명/업무단위*	수준	학위, 직급	노동환경, 노동위생, 직업병에 관한 훈련증명서	서명
1					
2					
3					
...					

* 상세하게 작성할 것

1.2. 노동환경 조사·측정 시행단위가 보유한 장비목록

순서	장비명/생산장소	제조년도	품질	비고
1				
2				
3				
...				

1.3. 노동환경 조사·측정 시행단위의 지층설계등본

2. 공포내용

2.1. 장비능력관련

2.2. 간부능력관련

2.3. 공포 (시행능력이 있는 노동환경의 요소 조사·측정능력 관련)

____년 ____월 ____일

공포단위대표

(서명, 인감)

부록 제8번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보건기관 활동보고 양식

보고 분기 ... __년

보고 항목 기입

(성 내 시군구 보건예방센터, 부·부처의 관리권한에 속한 보건관리 단위에 보냄)

노동기관명:-----

직속 성/도시:-----

주소:-----

생산제품, 주요서비스:-----

A. 근로자 수: 총 인원 ----- 그 중 여성:-----

1. 총 직접생산근로자 수:----- 그 중 여성:-----

2. 보건간부 수:-----

B. 노동조건 및 위험·위해요소들과 접촉하는 근로자 수

위해요소	건본 측정 수	노동위생 기준 초과 수	접촉근로자 수	접촉여성근 로자 수
1. 미기후				
2. 분진				
3. 소음, 진동				
4. 광선				
5. 독성물질				
.....				
6. 미생물				
7. 과중 스트레스				
8. 기타 요소				
.....				
.....				
.....				

C.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시행

1. 분기 내 노동위생검사 시행여부: 예 [] 아니오 []
2. 분기 내 노동안전검사 시행여부: 예 [] 아니오 []
3. 노동위생에 관해 교육받은 근로자 수:.....
4. 노동안전에 관해 교육받은 근로자 수:.....

D. 질병, 산업재해, 직업병

기간		병				산업재해				직업병			
분기	월 (1)	인원 (2)	비율 % (3)	일수 (4)	비율 % (5)	인원 (6)	비율 % (7)	일수 (8)	비율 % (9)	인원 (10)	비율 % (11)	일수 (12)	비율 % (13)
합계													

비고:

- (3) 행은 전체 종업원 간부와 비교율
- (7) 행은 전체 직접 생산종업원 간부와 비교율
- (5), (9), (13) 행은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일수와 비교율
- (11)은 위해요소와 접촉하는 종업원수와 비교율

E. _피보험 직업병 합계: ____년 ____분기

접촉 요소	병명	성명	나이, 성별		나이	근속 년수	직업병 평가비 율(%)	보험수여 미수여 여부	현재 접촉 환경
			남	여					
합계									

F. 분기 내 진료 합계: _____ 분기

그 중 질병종류:

순서	질병 종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득병	사망	득병	사망	득병	사망	득병	사망
1	결핵								
2	폐암								
3	급성 비염, 비강염, 후두염								
4	만성 비염, 비강염, 후두염								
5	급성 기관지염								
6	만성 기관지염								
7	폐렴								
8	기관지 알레르기								
9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위장염								
10	내분비								
11	정신병								
12	신경계								
13	눈								
14	귀								
15	심맥								
16	위								
17	간								
18	신장								
19	산부인과/여성 수								
20	유산/임신한 여성 수								
21	피부								
22	관절								
23	직업병								
24	말라리아								
25	기타 질병 (구체적 기재)								
	-								
	...								
26	산업재해 노동자 수								
	총합계								

G. 건강분류

정기건강검진 횟수	총합계	1종	2종	3종	4종	5종	비고
남성							
여성							
비율	%	%	%	%	%	%	

H. 보건 및 노동보호 경비

보건활동 경비:

그 중 의약비: 천 동

노동안전위생 경비: 천 동

기타 경비: 천 동

분기 내 예상계획 및 견해

.....

.....

.....

.....

.....

.....

.....

.....

단위 대표

_____년 _____월 _____일

보고자

(성명, 직급)

부록 제9번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노동보건활동 보고 양식 6개월/____년

(지역보건센터 보고양식에 따라 노동보건활동을 보건예방센터/중앙직활사·성
노동환경건강보호센터에 보고)

보건소 성/도시:-----

보건센터 시/군/구:-----

I. 보건기관 간부 및 대상자를 위한 양성과정 (대상종업원 및 생산기간 관리간부에 대해 별도페이지에 작성)

순서	내용	학급 수	기업기관 수	학생 수
1	보건간부를 위한 노동안전위생			
2	기업관리간부를 위한 노동안전위생			
3	근로자를 위한 노동안전위생			
4	직업병 예방			
5	작업장 건강 증진			
6	기타 내용			
	-			
	합계			

II. 관리범위 내의 생산기관 (변경사항 있을 경우 보고)

생산기관 종류	기관 수		간부 수		총 보건간부 수	의사 보유기관 수	보건조직 보유 기관 수				
	총계	기타	총계	여성			보건소보유	보건부보유	계약결 체	보건부미보유	기타
종업원 200명 초과											
종업원 51~200 명											
종업원 50명 미만											
총계											

III. 전공분야별 근로자 분포도 (변경사항 있을 경우 보고)

전공분야	종업원 50명 미만		종업원 51~200명		종업원 200명 초과		총계	
	기관	종업	기관	종업	기관	종	기관	종

	수	원수	수	원수	수	업원수	수	업원수
1. 농업임업								
2. 수산업								
3. 광업								
4. 가공업								
5. 에너지생산 및공급								
6. 건설업								
7. 상업, 수리서비스								
8. 호텔레스토랑								
9. 수송, 물류, 통신								
10. 재정, 신용								
11. 기술, 과학활동								
12. 국방안전								
13. 교육								
14. 보건 및 사회구제								
15. 사회문화활동								
16. 기타 활동								
합계								

* 한 기관 내 많은 전공분야가 있는 경우 주요 분야만 기입 (주 생산품 또는 종업원 50%이상 점유한 분야)

IV. 보고기간 내 노동환경 측정 결과

노동환경 측정 기관 수/총 보고기관 수: ____/____

순서	기관명	총종업원수	접촉근로자수	온도		습도		풍속		광선		분진		소음		진동		유독가스		방사선		자장		기타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																									
	총계																								

(1): 총 측정 건본 수;

(2): 허가기준 미충족 건본 수

V. 종업원의 건강 및 질병 현황

5.1. 병가 현황 (별도 1 페이지를 통해 분기 보고)

보고기관 수/총 기관 수: ____/____

순서	기관명	총 종업원 수	연중 병가인원 수	연중 병가 횟수	병가 일수	3일 이상 병가자 수
1						
2						
3						
4						
5						
	총계					

5.2. 진료받은 환자의 질병 구분 (기관 보고시점에 보고된 수)

보고기관 수/총 기관수: ____/____

경우의 수/보고기관의 총 종업원 수: ____/____

순서	질병 종류	경우의 수	
		득병한 경우	사망한 경우
1	결핵		
2	폐암		
3	급성 비염, 비강염, 후두염		
4	만성 비염, 비강염, 후두염		
5	급성 기관지염		
6	만성 기관지염		
7	폐렴		
8	기관지 알레르기		
9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위장염		
10	내분비		
11	정신병		
12	신경계		
13	눈		
14	귀		
15	심맥		
16	위		
17	간		
18	신장		
19	산부인과/여성 수		
20	유산/임신한 여성 수		
21	피부		
22	관절		
23	직업병		
24	말라리아		
25	기타 질병 (구체적 기재)		
	-		
	...		
26	산업재해 노동자 수		
	총합계		

VI. 직업병 발병·검정·검진 현황

6.1. 정기건강검진 시행 기관 수/총 기관 수: ____/____

6.2. 건강구분:

정기건강 검진 횟수	총합계					
	인원 수	1종	2종	3종	4종	5종
남성						
여성						
총계						

6.3. 보고기간 중 직업병 발병검사 결과:

순서	직업병명	직업 병 진찰 총 횟수	직업 병 특 의 심 수	총 검 정 수 검 횟 수	보조 금 1회 지급 수	보조 금 통 보 지급 수	보고시 점 총 합 계
1	규소 진폐증						
2	석면 진폐증						
3	섬유 진폐증						
4	만성 기관지염						
5	만성 기침						
6	납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7	벤젠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8	수은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9	수은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10	TNT 중독						
11	아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12	니코틴 중독						
13	농약 중독						
14	일산화탄소 중독						
15	X선 및 PX물질로 인한 병						
16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17	진동병						
18	만성 압력 감소병						
19	피부그을림						
20	피부궤양						
21	피부반점						
22	손톱 및 손톱주위 괴사						
23	결핵						
24	간염						
25	렙토스피라증						
	총계						

6.4. 보고기간 중 피보험 직업병

접촉요 소	병명	성명	나이, 성별		나이	근속 년수	직업병 평가비 율(%)	보험수여 미수여 여부
			남	여				
합계								

VII. 의견 및 결론

7.1. 연중 주목할 만한 활동 (노동안전위생 국가 주간, 과학연구 등 기타활동)

7.2. 지방부서의 평가 (계획 수행 상태에 대해)

7.3. 노동보건업무계획에 관한 의견

수상
(서명, 인감)

년 월 일
보고자

(2011년 6월 6일 보건부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붙임)

노동보건활동 보고 양식
6개월/____년

(보건예방센터, 부부처 노동환경건강보호센터의 보고양식에 따라
노동보건활동을 보건부에 보고)

보건소 성/도시: -----

보건예방센터, 부·부처 노동환경건강보호센터/부서:

I. 조직형태 및 법규문서 시행

1.1.노동보건에 관한 업무조직:

- 결정문 05/2006/BYT-QĐ에 따른 시행조직형태:

+ 독립 노동보건과 설립 예 [] 아니오 []

+ 직업병 진찰소 예 [] 아니오 []

+ 직업병 진찰소 설립결정 예 [] 아니오 []

+ 직업병 진찰소의 활동 활동함 [] 아니오 []

- 직업병 및 노동보건업무 담당 총 전임간부 수: 그 중:

의사 수	약사 수	대학학위자 수	중급학위자 수	기타 간부 수	직업병 감정원 수

1.2. 보건부의 시행규칙 시행 현황

순서	법규문서	통용여부 (예/아니오)	훈련받은 시·군 수	통용된 기관 수	시행전개 기관 수
1	시행문서 19/2011/TT-BYT				*
2	부처간 시행문서 08/TTLT				
3	시행문서 09/2000/TT-BYT				
4	결정문 3733/2002/QĐ-BYT				
5	시행문서 12/2006/TT-BYT				
6	시행문서 13/2007/TT-BYT				
7	지시문 07/CT-BYT				
8	시행문서 01/2011/TTLT-YT-LĐ				

* 시행규칙 19/2011/TT-BYT에 따라 기관수는 노동위생문서에 작성한다.

II. 센터의 직업병 및 노동위생기관·장비 현황

(보건예방기준에 따라 보고시점의 모든 기계류를 검토하고 별도 페이지에 작성하여 보고)

III. 보건기관 간부 및 대상자를 위한 양성과정 (대상종업원 및 생산기관 관리간부에 대해 별도페이지에 작성)

순서	내용	학급 수	기업기관 수	학생 수
1	보건간부를 위한 노동안전위생			
2	기업관리간부를 위한 노동안전위생			
3	근로자를 위한 노동안전위생			
4	직업병 예방			
5	작업장 건강 증진			
6	기타 내용			
	-			
	합계			

IV. 관리범위 내의 생산기관 (변경사항 있을 경우 보고)

생산기관 종류	기관 수		간부 수		총 보건 간부 수	의사 보유 기관 수	보건조직 보유 기관 수				
	총계	기타	총계	여성			보건 소보유	보건 부보유	계약 체결	보건 간부 보유	기타
종업원 200명 초과											
종업원 51~200 명											
종업원 50명 미만											
총계											

V. 전공분야별 근로자 분포도 (변경사항 있을 경우 보고)

전공분야	종업원 50명 미만		종업원 51~200명		종업원 200명 초과		총계	
	기관 수	종업 원수	기관 수	종업 원수	기관 수	종업 원수	기관 수	종업 원수
1. 농업임업								
2. 수산업								
3. 광업								
4. 가공업								
5. 에너지생산 및공급								
6. 건설업								
7. 상업, 수리서비스								

8. 호텔레스토랑								
9. 수송, 물류, 통신								
10. 재정, 신용								
11. 기술, 과학활동								
12. 국방안전								
13. 교육								
14. 보건 및 사회구제								
15. 사회문화활동								
16. 기타 활동								
합계								

* 한 기관 내 많은 전공분야가 있는 경우 주요 분야만 기입 (주 생산품 또는 종업원 50%이상 점유한 분야)

VIII. 직업병 발병·검정·검진 현황

8.1. 정기건강검진 시행 기관 수/총 기관 수: ____/____

8.2. 건강구분:

정기건강 검진 횟수	총합계					
	인원 수	1종	2종	3종	4종	5종
남성						
여성						
총계						

8.3. 보고기간 중 직업병 발병검사 결과:

순서	직업병명	직업 병 진찰 총 횟수	직업 병 특 의 심 수	총 검 정 수 검 횟 수	보조 금 1회 지급 수	보조 금 통 보 지급 수	보고시 점 총 합 계
1	규소 진폐증						
2	석면 진폐증						
3	섬유 진폐증						
4	만성 기관지염						
5	만성 기침						
6	납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7	벤젠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8	수은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9	수은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10	TNT 중독						
11	아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						
12	니코틴 중독						
13	농약 중독						
14	일산화탄소 중독						
15	X선 및 PX물질로 인한 병						
16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17	진동병						
18	만성 압력 감소병						
19	피부그을림						
20	피부궤양						
21	피부반점						
22	손톱 및 손톱주위 괴사						
23	결핵						
24	간염						
25	렙토스피라증						
	총계						

8.4. 보고기간 중 피보험 직업병

접촉요 소	병명	성명	나이, 성별	나이	근속 년수	직업병 평가비	보험수여 미수여
----------	----	----	-----------	----	----------	------------	-------------

			남	여			율(%)	여부
합계								

IX. 의견 및 결론

9.1. 연중 주목할 만한 활동 (노동안전위생 국가 주간, 과학연구 등 기타활동)

9.2. 지방/부서의 평가 (계획 수행 상태에 대해)

9.3. 노동보건업무계획에 관한 의견

9.4. 노동환경 조사·측정 시행공포기관의 통계목록

순서	시행공포기관명	연락처, 전화, Fax	간부 수	보고기간 중 노동환경 조사·측정시행 노동기관 수	소견
1					
2					
3					
...					
	총계				

수상
(서명, 인감)

년 월 일
보고자

시행규칙

중소기업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부의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

1989년 7월 11일 인민건강보호법에 근거하여,
1994년 6월 23일 노동법 제9장에 근거하여,
노동위생 및 노동안전에 관한 노동법의 몇 가지 조항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 1995년
1월 20일 정부 시행령 06/CP에 근거하여,
보건부의 기능·임무·권한·조직구조에 대해 규정한 1993년 10월 11일 정부 시행령
68/CP에 근거하여,
2000년 4월 3일 공문서 946/LDTBXH-BHLD의 노동사회보훈부 의견을 참고하여,
중소기업근로자 건강관리에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 적용범위 및 대상

1. 다음과 같은 모든 개인조직 및 생산·경영·서비스 활동을 하는 단위(이하 ‘기업’이라 부른다)
국영기업, 공단기업, 회사, 외국 투자자본 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협회, 행정사업에 속한 생산조합, 사회조직, 단체, 군대, 공안
2. 근로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보건단위

2.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

중소기업은 1998년 6월 20일 정부 공문서 68/CP-KTN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중기업은 51명~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을 말한다.
- 소기업은 50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내용

1. 노동위생에 관한 규정 충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장의 경우 내규를 자세히 적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한다.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예방조치법에 대해 알려주어 스스로 방지할 수 있게 한다.

2.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대한 교육: 매년 관리자는 직업상 상해 및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내용은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노동보건담당센터, 중앙직할시·성 보건예방센터, 성내 시군구 보건센터에 속한 보건예방팀에 따른다. (부록 제1번)
3. 응급처치조직: 사용자는 기업 내 응급처치조직을 구성해야한다. 응급처치 업무담당자는 업무훈련을 받아야 하고 중앙직할시·성 보건예방센터, 부·부처 보건센터, 시군구 보건센터의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각 분업단위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항목에 따라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한다. (부록 제2번) 응급처치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 제시·안내되어야 한다.
4. 노동위생문서 작성: 각 기업은 1996년 10월 21일 시행규칙 13/TT-BYT의 규정양식에 따라 노동문서를 작성해야한다. 매년 노동환경 조사·검사 결과 및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노동위생문서에 추가한다.
5. 노동환경 조사·검사: 매년마다 기업은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환경의 위해정도를 평가하는 노동환경 조사·검사업무를 조직해야한다. 노동환경 조사·검사는 1996년 10월 21일 시행규칙 13/BYT-TT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직업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업은 성급 보건예방센터 시행에 따른다.
 - 기타 기업은 지역보건센터에 속하는 보건예방팀 시행에 따른다.보건예방팀은 각 유형의 기업명단을 통계·작성하고, 성급 보건예방센터에 시행협력을 제안한다.
6. 채용건강검진: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근로자(견습생 포함)는 채용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검진결과에 근거하여 그에 부합하는 업무를 주어야한다. 채용건강검진 결과는 건강문서에 1부 보관해야한다.
7. 정기건강검진: 사용자는 최소 매년 1회 근로자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을 시행

할 책임이 있다. 정기건강검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직업병과 관련된 징후들을 조기 발견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 초기에 치료할 시간을 갖기 위함
- b.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이 약한 근로자를 위한 기능회복 및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함

검진조직은 충분한 수의 전문의를 보유해야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직업병을 진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의는 보유해야 한다. 건강검진서류는 이 시행규칙의 양식에 따른다. (부록 제3번)

건강분류검진은 전 기업의 근로자의 건강을 분류·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문의에 의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검진이다. 건강분류검진은 최소 1년에 3회 실시되어야 한다. 조건을 갖춘 기관들은 매년 건강분류 및 정기건강검진 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

8. 직업병조기발견검진: 사용자는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병 조기발견 검진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직업병 조기발견검진조직은 직업병 발병위험 기관의 정기건강검진과 연합할 필요가 있다. 직업병예방부서에 의한 직업병진찰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9.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따른 건강평가: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업재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는 의학감정위원회에 의해 건강평가를 받아야한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6개월에 1번 정기검진을 받아야하고 의학기관에서 기능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아야한다. 직업병에 대한 규정은 1998년 4월 20일 노동사회보훈부-보건부의 시행규칙 08/1998/TTLT를 따른다.

10. 현물을 통한 보양: 노동환경조건을 개선한 후에도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해요소가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현물을 통해 보양을 할 책임이 있다. (1999년 3월 17일자 시행규칙 10/1999/TTLT/BLDTBXH/BYT 적용) 기관보건간부는 고용주의 참모로서 업무특수성을 고려한 근로자를 위한 보양을 실시해야 한다. (당분, 우유, 과일 등)

11.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근로자의 작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위생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소, 깨끗한 물, 샤워장, 위생상 깨끗한 식당 및 휴게실. 각 기관은 질병예방을 위한 책·스티커·그림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한다. 여건이 된다면 이를 위한 개별 사무실을 만들 수 있다.

4.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책임

A. 기업의 책임

1. 노동사회보훈부-보건부 및 베트남노동총연맹의 1998년 10월 13일 시행규칙 14/1998/TTLT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건간부를 배치해야 한다.
 - 의사 또는 기업 내 보건소를 보유한 기업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 보건간부를 보유하지 않는 기업은 보건간부 1명을 배치시킨다.
 - 보건간부 1명을 배치시킬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 보건간부나 보건소 간부직원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공공관리를 위해 지역보건센터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간부는 기업의 노동관리에 부합하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 기업 내 안전위생원조직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한다.
2. 기업의 근로자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간부는 지역보건센터에 속한 보건예방팀, 성급 보건예방센터, 노동보건센터 또는 기타 양성기관을 통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훈련받아야한다.
3. 중소기업 내 근무하는 보건간부는 지역보건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의 노동보건업무에 대한 전공지도를 받아야한다.
4. 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기본건강관리·응급처치·진료를 충실히 수행하고, 근로자에게 질병예방에 대해 선전해야한다.

B. 시군구 보건단위의 책임

시군구 보건단위는 지역구 중소기업과 지도·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대한 정규조사·재측·교육선전 업무를 수행한다. 적극적으로 질병예방 활동을 주도한다. 유행병이 발생했을 경우 적시에 유행병 방지 조직에 참여한다.
2. 근로자의 건강관리 조치·안내를 위해 위해요소 및 기업 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3. 지역구 중소기업의 근로자 건강관리 문서를 관리한다.
4. 질병, 산업재해, 화학물질 중독 및 기타 재난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초기 대응한다.
5. 근로자에게 직업병예방 및 위생방역에 대해 선전한다.

C. 성 내 시군구 보건센터(보건예방팀)의 책임

1999년 8월 17일 보건부장 결정문 2468/1999/QD-BYT에 따라 보건예방팀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상부의 기술안내에 따라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폐수·폐물·폐기물 처리조치를 시행에 대한 재측 및 대중화를 실시한다.
2. 기업들이 노동위생, 노동환경 내 위해요소 관리, 근로자건강관리 대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노동위생문서는 2부 복사하여 한 부는 기업에 나머지 한 부는 보건예방팀에 보관한다.
3. 근로자의 안전위생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규정 시행을 촉구·안내한다.
4. 근로자를 위한 정기건강검진 조직: 보건예방팀은 기업과 함께 시간, 검진횟수, 검진 전문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기건강검진 조직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보장해야한다: 진단 및 치료방법 안내, 직업병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 및 환경 내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정기건강검진단은 사용자가 치료제도,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위한 기능회복,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들을 노동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충고한다.

5.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제도 수행을 검사하기 위해 지방의 기능기관과 함께 협력한다.
6. 관리지역 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건강에 관한 교육훈련, 특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및 농약중독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조직한다.
7. 시군구 보건소의 계획을 총합하여 성 보건소 및 성 보건예방센터에 보고한다.

D. 중앙직할시·성 보건예방센터의 책임

1.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연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근로건강 및 안전업무에 대해 상부에 배양임무를 조직한다.
3. 노동환경에 대한 검사·조사를 안내하고 규정에 따라 문서를 작성한다.
4. 정기건강검진 업무에 대해 안내·관리하고 직업병 발병 위험이 있는 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기직업병 발병검진을 실한다.
5. 군·현 및 기타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건강에 대한 훈련·교육을 선전·안내한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및 농약중독방지를 중점으로 다룬다.
6. 각 급의 보고제도의 시행에 대해 조사·재촉하고 상부기관에 총괄 보고한다.
7. 매년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관리업무 수행경험을 총괄·요약한다.

E. 부·부처 노동보건센터의 책임

1. 지방 보건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위생안전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일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노동위생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안내한다.
3. 노동환경 조사·검사 업무, 정기건강검진, 초기발생 직업병 검진 수행을 안내한다.

4.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요양·기능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안전위생 및 직업병예방에 대해 교육·훈련·선전한다.
6.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을 총괄·검사한다.

F. 중앙직할시·성 보건소의 책임

1.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업무를 전면지도 및 관리한다.
2. 기업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정부문서를 안내·유포한다.
3. 노동위생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단위와 기업 보건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이를 공고히 한다.
4. 근로자를 위한 기술 장비를 향상·강화한다.
5.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간부 수준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간부를 배치한다.
6. 기업 내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 제도의 수행여부를 검사한다.

5. 보고제도

1996년 10월 21일자 시행규칙 13/BYT-TT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제도를 수행한다.

분기보고: 기업은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완성하여 매 3월·6월·9월·12월 20일에 성 직속 시군구 보건센터(보건예방팀)와 지방보건센터에 보고한다.

반기(6개월) 및 연간 보고:

- 성 직속 시군구 보건센터는 매 6월·12월 20일에 보건소와 성 보건예방센터에 보고한다.
- 성 보건소(성 보건예방센터)와 부·부처 노동보건센터는 규정에 따라 보건부(보건예방부)에 보고한다.

6. 시행조직

1. 각 중앙직할시·성 보건소는 이 시행규칙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고, 각 급 및 관할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이 시행규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중앙직할시·성의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재받는다.
2.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관·부·부처는 관리 권한에 속한 기관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업무규정들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재촉한다.
3.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 후 15일 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보건부(보건예방부)를 대리하는 각 지방기관에 건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부록 제1번

근로자를 위한 노동위생 및 초기응급처치 훈련내용 항목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에 붙임)

내용	시간
I. 노동위생 및 직업병예방	12시간
1. 근무지의 미기후 및 온도로 인한 상해와 그 예방법	
2. 복사열로 인한 상해와 그 예방법	
3. 분진으로 인한 상해와 그 예방법	
4. 소음·진동으로 인한 상해와 그 예방법	
5. 화학물질로 인한 상해와 그 예방법	
6.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직업병에 대한 안내	
II. 응급처치	12시간
1. 감전 시 응급처치	
2. 화상 시 응급처치	
3. 질식 시 응급처치	
4. 심장마비 시 응급처치	
5. 지혈 및 드레싱	
6. 환자이송	
7.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시 응급처치	

부록 제2번

구급상자에 관한 규정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에 붙임)

1. 구급상자의 위치

- 근로자 작업장에 놓는다.
- 쉽게 볼 수 있고, 집을 수 있고, 특별한 표시가 있는 곳에 놓는다.
(일반적으로 십자표시)
- 근로자들이 사용규정과 위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통보한다.

2. 구급상자의 장비·도구·약

- 구급상자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도구들이 권장 수량에 맞게 들어있어야 한다. 다른 물건들은 둘 수 없다.

순서	최소 장비	상자 A형 (종업원 25명 용)	상자 B형 (종업원 50명 용)	상자 C형 (종업원 100명 용)
1	테이프	02	02	04
2	테이프 5 x 200 cm (롤)	02	04	06
3	일반테이프 10 x 200 cm (롤)	02	04	06
4	대형테이프 15 x 200 cm (롤)	01	02	04
5	거즈 (10개/묶음)	01	02	04
6	흡수 붕대 (묶음)	05	07	10
7	삼각 붕대 (개)	04	04	06
8	고무 거즈 6 x 100 cm (개)	02	02	04
9	고무 거즈 4 x 100 cm (개)	02	02	04
10	가위	01	01	01
11	붕대가위	04	04	06
12	일회용 장갑 (đui)	02	02	04
13	방독마스크	01	01	02
14	무균수 또는 생리식염수 100ml (수돗물 아님)	01	03	06
15	팔 부목 (세트)	01	01	01
16	하박 부목 (세트)	01	01	01

17	허벅다리 부목 (세트)	01	01	02
18	정강이 부목 (세트)	01	01	02
19	소독약 (병)	01	01	02
20	응급처치 개론서	01	01	01

3. 구급상자의 수량

구급상자 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도구상자는 근로자 수에 맞게 배치한다. 매 층마다 최소 1개의 구급상자 또는 1개의 응급처치 도구상자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 수에 따른 상자유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수	구급상자 종류 및 수량
25명 미만	최소 1개의 상자 A형
26명~50명	최소 1개의 상자 B형
51명~150명 이상	최소 1개의 상자 C형

비고: 상자 B형 1개는 상자 A형 2개에 상응하고, 상자C형 1개는 상자 B형 2개에 상응한다.

부록 제3번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에 붙임)

보건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정기건강검진 문서

문서번호.....

성명: _____

근무지: _____

단위명: _____

성/도시: _____

.....년

정기건강검진 문서

단위명:

성/도시:

I. 기본정보 (자진신고)

1. 성명

2. 생년월일

3. 남 []

여 []

4. 출생지:

5. 거주지:

5. 근무시작년도:

5. 현재 담당업무:

6. 소속

7. 현재 담당업무 시작년도:

8. 현재 업무수행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요소들에 체크하십시오.

고온 []

저온 []

소음 []

진동 []

분진 []

유독가스 []

용매 []

기타 화학물질 []

스트레스 []

광선 []

과중 []

불충분 []

기타요소:

9. 배분받은 보호장비에 체크하십시오.

장갑 []

일반마스크 []

마스크 []

방독마스크 []

귀마개 []

보안경 []

보호복 []

장화/신발 []

기타 []

10. 단위근무 전 건강상태:

11. 흡연여부: 예 []

아니오 []

12. 흡연자일 경우 흡연기간: _____년

13. 만성질병 여부:

단위 대표
(서명, 인감)

II. 건강검진

검진내용	년	년	년	년	년
1. 체력 신장: cm, 몸무게: kg 검진 의사 서명					
2. 눈 검진 의사 서명					
3. 귀, 코, 후두 검진 의사 서명					
4. 치아, 구강, 얼굴 검진 의사 서명					
5. 정신, 신경 검진 의사 서명					
6. 순환계 혈압: / mmHg 혈액: 리터/분 검진 의사 서명					
7. 호흡 검진 의사 서명					
8. 소화 검진 의사 서명					
9. 비뇨/산부인과 검진 의사 서명					
10. 운동신경 검진 의사 서명					
11. 피부 검진 의사 서명					
12. 내분비 검진 의사 서명					
13. 부기 검진 의사 서명					
14. 임상결과(있는 경우) a. b. c.					
결론 및 의견 - 치료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 - 직업병검진 필요여부: - 건강분류:					
.....년월일 검진단위 대표 (서명, 인감, 직급)					

시행규칙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2006년 6월 29일 수정·보완되고, 2002년 4월 2일 수정·보완된, 1994년 6월 23일 노동법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 27일 시행령 110/2002/ND-CP에 의해 수정·보완된, 1995년 1월 20일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시행령 06/CP에 근거하여,
노동사회보훈부의 기능·임무·권한·조직구조에 대해 규정한 2007년 12월 25일 정부 시행령 186/2007/ND-CP에 근거하여,
보건부의 기능·임무·권한·조직구조에 대해 규정한 2009년 12월 27일 시행령 188/2009/ND-CP와 2009년 12월 27일 시행령 188/2009/ND-CP의 제3조에 대해 수정·보완한 2010년 3월 9일 시행령 22/2010/ND-CP에 근거하여,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는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 개정범위

이 시행규칙은 국내외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업무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시행규칙은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기관·조직·개인에 적용된다. (이하 ‘기관’이라 부른다)

1.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기관·조직·개인 (무장 세력에 속한 단위는 제외)
2. 베트남 기업이 해외에 공정을 두어 베트남 근로자들이 해당 공정에서 근무하도록 한 기업
3. 외국기업·기관·조직·개인 또는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외국조직.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계약체결한 조약 또는 베트남 사법기관이 기타 규정에 대해 맺은 협정의 경우 제외한다.

제3조 산업재해

1. 산업재해란 업무나 작업의 수행 과정 중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신체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a) 산업재해는 노동업무나 작업수행과 같은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b) 산업재해는 사용자 또는 문서를 통해 사용자의 직접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배정받은 업무 및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c) 산업재해는 노동법과 기관내규에서 허가하는 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과정(휴식, 식사, 현물보양, 월경, 수유, 목욕, 생리활동)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산업재해는 합당한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a) 출·퇴근길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 b)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외국에서 임무(토론·회의참여, 단기실습, 현장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

제4조 산업재해 분류

1. 사망재해란 근로자가 재해발생장소에서 즉사 또는 응급치료를 위한 이송과정·응급처치과정·치료과정에서의 사망 및 산업재해로 인한 주요상해가 재발되어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의검정서의 결과에 따른다)
2. 중재해란 근로자가 이 시행규칙 부록 제1번에서 규정된 상해 중 최소 1개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3. 경재해란 근로자가 이 조 제1번, 제2번 항목에서 규정되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산업재해 신고

1. 기관의 관리범위에 속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문서를 통해 사용자의 직접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배정받

은 업무 및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자나 재해발견자(근로자,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즉시 신고해야한다.

2. 이 조 제1번 항목에서 제시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재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신속한 방법(직접연락, 전화, 팩스, 공보, 이메일)을 통해 중앙직할시·성 노동사회보훈소, 산업재해 발생지역의 현급 공안기관, 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있는 상급기관(보유 시)들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a) 성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 성에 신고한다.

b) 치료과정에서의 사망 및 산업재해로 인한 주요상해가 재발되어 사망하는 경우(법의검정서의 결과에 따라)에는 사망근로자가 속한 기관은 해당 사고 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이 있는 성급 노동사회보훈소에 신고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제도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 산업재해는 노동법과 기관내규에서 허가하는 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과정(휴식, 식사, 현물보양, 월경, 수유, 목욕, 생리활동)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d) 신고내용은 이 시행규칙 부록 제2번의 규정양식에 따른다.

3. 근로자가 교통사고(기관내부노선에서 발생한 사고 제외)로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근로자가 속한 기관은 교통경찰기관의 사고처리문서에 근거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거나 성급 노동사회보훈소 조사반에 신고하기 위해 지방정권의 확인서나 사고발생지역의 관할공안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신고는 이 조의 제2번 항목에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정히 시행한다.

4. 외국에서 임무수행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직접관리 기관이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신고한다.

a) 재해소식을 접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가장 신속한 방법(직접연락, 전화, 팩스, 공보, 이메일)을 통해 소재지 성급 노동사회보훈소 조사반에 인편을 통해 신고한다.

b) 타 기관을 통해 파견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소식을 접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타 기관은 해당 근로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하여 알린다. 재해소식을 접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근로자 관리기관은 소재지 내 노동사회보훈소 조사반에 신고한다.

c) 신고내용은 이 시행규칙 부록 제2번의 규정양식에 따른다.

제6조 산업재해조사단 설립

1. 기관급 산업재해조사단

- a) 기관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재해 조사를 위해 기관급 산업재해조사단을 즉시 설립하여야 한다.
- b) 기관급 산업재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기관소유주) 또는 문서를 통해 사용자의 직접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
 - 기관노조집행부 또는 임시노조집행부 대표, 기관 내 노조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전체노동자 대표 및 구성원
 - 노동안전위생업무 담당자 및 구성원
 - 기관의 보건간부 및 구성원
 - 기타 소수 구성원 (필요 시)

2. 성급 산업재해조사단

사망재해 또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재해를 입었다는 기관의 보고를 받거나 이 시행규칙의 제7조 제2번 항목 C번에서 규정한 서류 및 문서를 접수받았을 경우, 성급 노동사회보훈소 감독관은 성급 노동사회보훈부 조사단장의 제의에 따라 성급 산업재해조사단을 설립한다. (이 시행규칙 부록 제3번의 규정양식에 따름)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a) 노동사회보훈소 조사단 대표 및 구성원
- b) 보건소 대표 및 구성원
- c) 성급 노동연합 대표 및 구성원
- d) 성급 농민협회 대표 및 구성원(농업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일 경우)
- ㄸ) 기타 소수 구성원 (필요 시)

3. 중앙급 산업재해조사단

노동사회보훈부부장은 노동사회보훈부 조사단장의 제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단을 설립·결정한다. (이 시행규칙 부록 제4번의 규정양식에 따름)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a) 노동사회보훈부 조사단 대표 및 구성원
- b) 보건소 대표 및 구성원
- c) 베트남 노동총연맹 대표 및 구성원
- d) 베트남 농민협회 대표 및 구성원(농업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일 경우)
- d) 기타 소수 구성원 (필요 시)

제7조 산업재해조사단의 사법권

1. 기관급 산업재해조사단

- a) 기관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재해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이 조의 제2번, 제3번 항목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 기관의 관리 권한에 속한 근로자의 재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 b) 해당 국가(베트남 기업과 계약을 맺은)의 사법권을 가진 기관과 협력하여 베트남 기업이 해외에 공정을 두어 베트남 근로자들이 해당 공정에서 근무하도록 한 기업(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계약체결한 조약 또는 베트남 사법기관이 기타 규정에 대해 맺은 협정의 경우 제외)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재해를 입은 산업재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기관급 산업재해조사단은 조사 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한다.

2. 성급 산업재해조사단

- a) 성 내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재해를 입은 산업재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 b) 성 내 기관급 산업재해조사단이 조사한 산업재해에 대해 재조사한다. 베트남 기업이 해외에 공정을 두어 베트남 근로자들이 해당 공정에서 근무하도록 한 기업(성 내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대해)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재조사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계약체결한 조약

또는 베트남 사법기관이 기타 규정에 대해 맺은 협정의 경우 제외한다.
재조사는 이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 c) 외국에서 임무(토론·회의참여, 단기실습, 현장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관리 기업은 해당 재해에 관한 서류·문서를 5근로일 이내에 작성한 뒤 성급 노동사회보훈부 조사단에 제공하여 이 시행규칙 부록 제7번의 규정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해에 관한 서류·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외국에서의 토론·회의참여, 단기실습, 현장연구 프로그램 수행 및 출장
- 외국의 사법권을 가진 기관의 현장조사보고서 번역문(원본 사진 첨부)
- 외국의 사법권을 가진 기관의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을 담은 번역문(원본 사진 첨부)
- 시체검사보고서 또는 상해검사보고서 번역문(원본 사진 첨부)
- 피해자, 목격자 또는 재해 관련자의 진술을 담은 보고서 번역문(보유 시)
- 외국의 사법권을 가진 기관의 재해확인서 번역문(원본 사진 첨부)
- 외국병원의 상해증명서(원본 사진 첨부) 번역문 또는 베트남병원의 상해증명서(베트남에서 치료받은 경우)
- 외국병원의 퇴원증(원본 사진 첨부) 번역문 또는 베트남병원의 퇴원증(베트남에서 치료받은 경우)

3. 중앙급 산업재해조사단

노동사회보훈부부장의 필요시 노동사회보훈부 조사단장의 제의에 따라 산업재해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성급 산업재해조사단이 조사한 산업재해에 대해 재조사하고, 이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다.

4. 사망재해 또는 이 시행규칙 제5조 제5번 항목에서 제시한 영역에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재해에 당했을 경우 해당 영역 관리 부·부처는 근로자 소재지의 성급 노동사회보훈소 조사단(또는 노동사회보훈부 조사단)과 협력하여 산업재해조사단을 설립하고 조사 실시 및 이 시행규칙 부록 제7번에의 규정양식에 따라 산업재해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 산업재해조사단의 임무

1. 사망재해 또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재해를 입었다는 기관의 보고를 받은

경우 성급 노동사회보훈소 감독관은 산업재해조사단의 참여를 위해 이 시행규칙 제6조 제2번 항목에서 규정된 산업재해조사단 조직에 속한 기업들에게 즉시 보고해야한다.

2. 산업재해조사단은 사용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서류·문서를 요구하고 재해관련 조사중인 성 또는 현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상해조사 및 증거·물증·재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산업재해조사단장의 임무

- a) 이 시행규칙 제6조 제2항목 b), c), d)번과 제3항목 b), c), c)번과 연관된 기관의 적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시행을 결정한다.
- b) 조사단의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한다.
- c) 조사단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조사단장은 합의를 위해 조사단 내 토론을 실시한다.
- d) 산업재해조사보고서를 공포한다.

4. 산업재해조사단장 구성원의 임무

- a) 산업재해조사단장에 의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조사단의 일반활동에 참여한다.
- b) 직속관리기관의 대표의 의견을 보류하고 보고할 권한이 있다.
- c) 조사단의 공포가 있기 전까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문서를 누설하지 않는다.

제9조 산업재해조사과정

1. 기관급 산업재해조사단의 경우

- a)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료 및 증거·물증 수집
- b) 이 시행규칙 부록 제5번의 규정양식에 따라 피해자, 목격자 또는 재해 관련자의 진술 수집
- c) 법의검정·기술검정 제안(필요 시)
- d) 수집된 진술 및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처리를 실시한다.
 - 산업재해 경과
 - 산업재해 발생원인(원인제공자가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사용자와 근로

자도 아닌 다른 원인이지 정확하게 기록한다)

- 산업재해 결과(산업재해인지 산업재해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인지 산업재해가 아닌지 정확하게 기록한다)
- 위반정도 및 산업재해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리방법 제안
- 해결방법 및 유사산업재해 재발방지

d) 이 시행규칙 부록 제6번의 규정양식에 따라 산업재해조사보고서 작성

e) 조사완료 후 이 시행규칙 부록 제8번의 규정양식에 따라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 및 회의를 조직한다.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사단장(회의 주재)
- 사용자(기관소유주) 또는 문서를 통해 사용자의 직접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자
- 산업재해조사단 구성원
- 산업재해자 또는 산업재해자 친인척 대표, 목격자 또는 재해와 관련된 자
- 기관노조집행부 또는 임시노조집행부 대표, 기관 내 노조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전체노동자 대표 및 구성원
- 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상부기관 대표(필요시)
-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 중 산업재해보고서의 내용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의견 및 서명을 적어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에 작성한다.

2. 성급 산업재해조사단의 경우

a) 이 조의 제1번 항목 a), b), c), d)번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행한다.

b) 각 산업재해에 대해 이 시행규칙 부록 제7번의 규정양식에 따라 산업재해보고서를 작성한다.

c) 시행규칙 부록 제8번의 규정양식에 따라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 및 회의를 조직한다.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사단장(회의 주재)
- 산업재해조사단 구성원
- 사용자(기관소유주) 또는 문서를 통해 사용자의 직접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자

- 산업재해자 또는 산업재해자 친인척 대표, 목격자 또는 재해와 관련된 자
- 기관노조집행부 또는 임시노조집행부 대표, 기관 내 노조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전체노동자 대표 및 구성원
- 공안기관, 인민검찰청 대표(사망 산업재해인 경우)

d)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 중 산업재해보고서의 내용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의견 및 서명을 적어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에 작성한다. 사용자 또는 문서를 통해 사용자의 직접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에서 서명 및 인감(보유시)을 날인하고 산업재해조사단의 제안을 시행한다.

d)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를 완성한 일로부터 3근로일 이내에 성급 산업재해조사단은 산업재해조사보고서와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를 산업재해조사단 구성원이 있는 기관, 노동사회보훈부(노동안전국 및 부서 검사관), 산업재해 발생기관, 피해자, 피해자 친인척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보낸다.

3. 중앙급 산업재해조사단의 경우

a) 노동사회보훈부장의 산업재해조사단 설립 결정 후 산업재해조사단장은 이 시행규칙 제6조 제3번 항목에서 규정된 산업재해조사단 조직이 속한 기관에 산업재해조사단의 참여를 위해 보고한다.

b) 산업재해조사단은 사용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서류·문서를 요구하고 재해관련 조사중인 성 또는 현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상해조사 및 증거·물증·재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c) 이 조 제2번 항목 b), c)번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행한다.

d)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 중 산업재해보고서의 내용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의견 및 서명을 적어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에 작성한다. 사용자 또는 문서를 통해 사용자의 직접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에서 서명 및 인감(보유시)을 날인하고 중앙급 산업재해조사단의 제안을 시행한다.

d)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를 완성한 일로부터 3근로일 이내에 중앙급 산업재해조사단은 산업재해조사보고서와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를 산업재해조사단 구성원이 있는 기관, 노동안전국(노동사회보훈부), 산업재해 발생기관, 피해자, 피해자 친인척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보낸다.

제10조 산업재해조사기간

1. 산업재해조사기간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산업재해조사보고서가 공포되는 날까지로 산출한다.
 - a) 경재해의 경우 2근로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b) 중재해의 경우 5근로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c) 2명이상의 중재해의 경우 15근로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d) 사망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단이 경찰조사기관으로부터 산업재해에 관련된 자료·물건을 충분히 받은 뒤로부터 20근로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술감정 또는 법의감정이 필요한 산업재해의 경우 40근로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사망재해 또는 2명이상의 중재해에 대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만료 5근로일 전에 산업재해조사단장은 조사단 설립결정자에게 요청·보고해야 한다. 조사를 위한 기간연장은 이 조 제1번 항목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산업재해문서

1. 산업재해문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현장조사보고서
 - b) 현장약도
 - c) 현장 및 피해자 사진
 - d) 시체검사 또는 상해검사보고서
 - d) 기술감정 및 법의검정보고서(보유 시)
 - e) 피해자, 목격자 또는 재해 관련자의 진술보고서
 - g) 산업재해조사보고서
 - h)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
 - i) 치료받은 병원의 상해증명서

- k) 치료받은 병원의 퇴원증(보유 시)
- 2. 하나의 산업재해에 다수의 재해근로자가 있는 경우 각 근로자마다 별도의 문서를 갖는다.
- 3. 산업재해 발생기관 및 조사단 구성기관의 산업재해보고서의 유지보관기간은 이 시행규칙 제13조 제9번 항목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고소·고발 시 산업재해재조사

1. 산업재해보고서 공포 후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 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 a) 고소·고발을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로일 이내에 기관·조직은 산업재해조사단 설립결정을 해야 하고 고소고발법이 정한 수순·수속에 따라 고소·고발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 b) 고소·고발자가 이 조 제1번 항목의 a)번대로 해결할 책임이 있는 조직·기관의 결과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소·고발할 경우에는 조직·기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조사시행을 위해 상급 산업재해재조사단을 조직해야한다.
 - 산업재해재조사단은 이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사법권에 따라 조사를 시행한다. 동시에 재조사결과를 고소·고발자에게 문서를 통해 보고한다.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 성급 산업재해재조사단은 기관급 산업재해재조사단이 재조사한 산업재해를 재조사한다.
 - 중앙급 산업재해재조사단은 성급 산업재해재조사단이 재조사한 산업재해를 재조사한다. 중앙급 산업재해재조사단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 c) 기관급 산업재해재조사단 및 산업재해 발생기관은 성급 산업재해재조사단에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료 및 증거·물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 d) 성급 산업재해재조사단은 중앙급 산업재해재조사단에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료 및 증거·물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 d) 재조사기간은 조사결과공포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벽지에서 발생하거나 복잡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재조사보고서가 공포되면 기존 산업재해보고서는 법적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산업재해발생기관 사용자의 책임

1. 재해자에 대해 적시 응급처치
2. 이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공포
3.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사망재해 및 경제해 사고현장 유지
 - a)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약도작성, 문서작성, 사진촬영, 현장촬영을 한다. (가능 시)
 - b)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조사단계를 마무리하거나 성급 산업재해조사단 또는 공간기관의 문서상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현장처리 및 시체매장이 가능하다.
4. 상급 산업재해조사단의 요구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료 및 증거·물증을 즉시 제공하고 해당 자료 및 증거·물증에 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5. 요청 시 산업재해조사단에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재해관련자를 위한 여건을 만든다.
6. 이 시행규칙 제7조 제1번 항목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를 조직한다.
7.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를 완성한 일로부터 3근로일 이내에 기관급 산업재해조사단은 산업재해조사보고서와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를 다음과 같은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보낸다.
 - a) 산업재해자 또는 산업재해자 친인척
 - b) 재해발생기관 주소지의 성급 노동사회보훈소 조사단
 - c) 재해발생기관 주소지에 산업재해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사회보험기관
 - d) 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상급기관(보유 시)
8. 산업재해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9. 근로자에 관한 산업재해 서류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유지한다.
 - a) 사망산업재해의 경우 15년

b) 기타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자 정년퇴직 시까지

10. 산업재해조사 및 재조사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경비를 정산한다.

a) 현장 정지

b) 현장 및 피해자 촬영·인쇄·현상

c) 기술감정 및 법의감정(필요 시)

d) 시체검사

d) 산업재해에 관한 문서 게재

e) 산업재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g)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조직

h) 상기 비용은 기업소득세법에 관한 법률시행규정에 따른 노동기관의 합리적인 지출이며, 노동기관의 일반활동경비 및 경영산출경비에서 산입하여 결산한다.

i)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법 및 조치방법 시행, 경험산출, 산업재해조사보고서에 기술된 의견 시행 및 결과보고, 산업재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사법권에 따른 처리

제14조 산업재해자·목격자·산업재해 관련자의 책임

1. 산업재해조사단의 요구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정직하게 진술하며,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2. 산업재해자·목격자·산업재해 관련자의 진술은 이 시행규칙 부록 제5번의 규정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5조 산업재해 통계 및 보고

1. 기관의 경우

산업재해조사보고서 및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공포를 위한 회의문서를 입수한날로부터 2근로일 이내에 재해자 관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통계 및 보고를 해야 한다.

- a) 각 기관은 이 시행규칙 부록 제9번의 규정양식에 따른 산업재해통계목록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통계목록에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기입해야한다.
 - 관리권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는 산업재해통계목록에 기입한다.
 - 한 명의 근로자가 한 건 이상의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각 산업재해를 별도 기재한다.
 - 모든 산업재해는 관리권한에 있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휴업을 제공하며 이를 통계에 기록한다. 산업재해가 아닌 것은 보고서 상에 “산업재해 없음”이라고 명확히 기재한다.
- b) 모든 기관은 이 시행규칙 부록 제10번의 규정양식 및 다음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 총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반기 및 연간)
 - 성 내 주소지를 둔 기관은 산업재해 총 현황을 해당 성의 노동사회보훈소에 보내야한다. 반기보고의 경우 7월 5일전에 연간보고의 경우 다음 해 1월 10일전에 직접 또는 팩스·우편·이메일을 통해 보고한다.

2. 각 성의 노동사회보훈소의 경우

- a) 성 내 주소지를 둔 기관의 상반기 및 연간 산업재해 총 현황을 종합한다.
- b) 이 시행규칙 부록 제11번의 규정양식에 따라 산업재해 총 현황 보고서를 상반기보고의 경우 7월 15일전에 연간보고의 경우 다음 해 1월 25일 전에 노동사회보훈부(노동안전국) 및 성 통계국에 보낸다.

제16조 시행책임

1. 각 기관은 이 시행규칙의 규정들을 엄중히 시행할 책임이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법 보장한다. 주변 환경 및 작업구역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평가,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및 선전
2. 각 성의 노동사회보훈소는 해당 성의 모든 기관들이 이 시행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보급할 책임이 있다.
3. 각 부·부처 기관 및 성 인민위원회는 관리권한에 속한 기관들이 이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조사·재촉할 책임이 있다.
4. 노동사회보훈부는 전국단위의 산업재해 현황을 매 반기 및 분기에 정기 보

고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시행효력

1. 이 시행규칙은 2012년 7월 4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2. 2005년 3월 8일 산업재해에 대한 신고·조사·문서작성·정기보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노동사회보훈부-보건부-베트남노동총연맹간의 부처 간 시행규칙 14/2005/TTLT-BLĐTBXH-BYT-TLĐLĐVN은 이 시행규칙이 효력을 가진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노동사회보훈부 및 보건부에 건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3. 각 부·부처 기관 및 성 인민위원회는 관리권한에 속한 기관들이 이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조사·재촉할 책임이 있다.
4. 노동사회보훈부는 전국단위의 산업재해 현황을 매 반기 및 분기에 정기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건부 총리

(서명)

응우옌 타잉 룡

노동보훈사회부 총리

(서명)

부이 홍 링